

남성의 편지와 여성의 편지

-쓰시마(對馬) 종가문고(宗家文庫)의 한글 서간에 의거한 비교-

기시다 후미타카(岸田文隆 KISHIDA Fumitaka), 오사카대(大阪大)

Abstract

"Letters by Men and Women: A Comparison Based on Tsushima Souke Bunko Hangul Letters)"

About Hangul letters exchanged between Japan and Korea during the Edo period, previously only 8 letters which was introduced by the OSA Masanori (1978) were known. But the publication of the list of ancient documents in Tsushima Souke Bunko in 2009 and 2012 revealed the existence of more than 100 new ones. Most of the Hangul letters found this time are related to negotiations on the so-called Joseon Tongsinsa's Yeokjihaingbing(易地行聘). The last Joseon Tongsinsa in 1811 was changed to hold a ceremony for exchanging national diplomatic documents in Tsushima instead of Edo-jo Castle, but negotiations were extremely difficult and took 24 years. These Hangul letters were exchanged between ODA Ikugoro, a Korean-language translator of Tsushima Domain, and Japanese-language translators of Korea. They clearly tell us the reality behind the scenes of diplomatic negotiations, which was one of the biggest pending issues between Japan and Korea in the 19th century.

What is unique about these Hangul letters is that both the sender and the recipient are male. Most general Hangul letters found in Korea are either sent or received by women. This peculiarity is reflected in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the Hangul letters in Tsushima Souke Bunko, such as its heavy use of Chinese words and Chinese characters.

차례 :

1. 들어가기: 쓰시마 종가문고 한글 서간 발견의 경위
2. 자료 소개: 왜학역관(倭學訳官) 최경(백옥)(崔瑀(伯玉))의 한글 서간
3. 쓰시마 종가문고 한글 서간의 특징: 한국 국내 자료(여성의 편지)와의 차이점

1. 들어가기: 쓰시마 종가문고 한글 서간 발견의 경위

에도(江戸) 시대에 일본과 조선 간의 외교 현장에서 의사소통이나 정보전달은 대부분 한국어로 행하여졌다고 추측되지만 이에 사용된 한국어가 구체

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드러내는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의사소통의 수단인 한국어 자체는 거의 기록되는 일이 없고 한국어를 매개로 하여 얻어진 정보만이 일본어나 한문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적으나마 전해지는 한국어 자료에는 한자차용 표기, 즉 이두식 표기로 기록된 것과 한글로 기록된 것이 있는데 특히 후자는 현존하는 자료가 매우 적다. 가끔 2차 자료인 기록류에 한글문서를 옮겨 적은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문서 원본이 전해지는 것은 오사 마사노리(長正統 1978)가 소개한 다음의 왜학역관 한글편지 8통이 우리가 아는 전부였다.

- (01) 朴俊漢이 아무에게 보낸 서간(丁巳(1797)閏6月28日)
- (02) 崔国楨이 小田幾五郎에게 보낸 서간(庚申(1800)10月24日)
- (03) 崔瑀이 小田幾五郎에게 보낸 서간(申(1800)10月24日)
- (04) 永野兼一郎¹⁾이 三伝語官에게 보낸 서간((1803年1月)12日)
- (05) 朴致儉이 아무에게 보낸 서간(癸亥(1803)2月6日)
- (06) 崔瑀이 小田幾五郎에게 보낸 서간(癸亥(1803)2月24日)
- (07) 賑恤庁別將朴聖奎·李裨將이 内田茂右衛門에게 보낸 서간(乙丑(1805)9月20日)
- (08) 別差 아무가 아무에게 보낸 서간(연대 미상)

그러나 이 한글서간들은 그 수가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조간 교류현장의 한국어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서 주목을 받아, 그 가치가 높이 인정되어 온 것은 주지된 바이다.

長正統(1978)에 의해 한글서간 8통이 소개되면서 쓰시마 종가문고에 그 밖에도 한글서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추측은 쉽게 할 수 있었으나 불행하게도 그 후 자료 발굴은 진전되지 못했다. 그것은 그 한글서간들이 쓰시마 종가문고의 4만 점에 달하는 일지물(一紙物) 자료 속에 매몰되어 있어서 열람조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9년 이후에 이르러 대마도 종가문고의 일지물 자료가 정리되어 목록이 간행되면서 이들 자료를 둘러싼 상황은 일변하였다. 이전에는 그 존재를 알 수가 없었던 새로운 한글서간류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들 자료의 열람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対馬歴史民俗資料館編(2009)의 「解題」 p.466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特異なものといえばハングルで書かれた訳官書状が150通ほどある。そのうち16通についてはかつて長正統氏が紹介された(「倭学訳官書簡よりみた易地行聘交渉」『史淵』第115

1) 長正統(1978)에서는 이 한글서간의 발신자 이름을 「永野兼一郎」라고 했으나, 「永好堂」 (=崔瑀(伯玉))이라고 읽어야 한다.

輯)がなお100余通残存しているのである。ほかに漢文による訳官書状や訳官が和館の代官らに手渡した覚書、また釜山へきた使節に「五日次(5日ごとに渡される食料)」を支給するむねの文書などもある。」

[특이한 것으로서는 한글로 씌어진 역관 편지가 150통 정도 있다. 그 중 16통²⁾에 관해서는 일찍이 長正統 씨가 소개하셨지만 (「倭学訳官書簡よりみた易地行聘交渉」『史淵』第115輯) 그 밖에도 100여통 남아 있는 것이다. 그 밖에 한문으로 된 역관 편지나 역관이 왜관의 대관들에게 준 각서, 그리고 부산에 온 사절에게 오일차(5일마다 지급되는 식량)를 지급한다는 문서 등도 있다.]

이 「解題」에 있는 “150통”이라는 것이 실수와 어느 정도 떨어진 것인가에 관해서는 더 자세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다행하게도 2013년부터 쓰시마 역사민속자료관(対馬歴史民俗資料館)의 주관하에 조사사업이 개시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한글서간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 長正統(1978)에 의하여 소개된 한글서간은 16 통이 아니라 8 통이다.

史料番号	表題	西暦	年月日	発給 (発信者)	受給 (受信者)	形態	員数	紙数	法量	料紙	備考	宗家文庫一紙物 管理番号
史料1	覚	(1795)	9月	訓導士正朴正・景和朴主簿	小田幾五郎・吉松右助	継紙	1通	9紙	24.8×221.0	楮紙	(端裏書)「乙卯年九月廿八日／士正方諺文にて差出候事」	815-6-6
史料2	覚(草案)	(1795)	乙卯9月21日	訓導士正朴正・景和朴主簿	小田幾五郎・吉松右助	継紙	1通	4紙	24.1×65.3	楮紙	(端裏書)「乙卯起り 本書館守へ差出候扣」	1689
史料3	[覚](草案)	1795	乙卯9月24日	訓導士正朴正	小田幾五郎	継紙	1通	4紙	24.4×87.5	楮紙		815-6-7
史料4	覚(草案)	1795	乙卯9月	訓導士正朴正・景和朴主簿	小田幾五郎・吉松右助	継紙	1通	3紙	24.1×83.0	楮紙	(端裏書)「乙卯九月諺文書付之写し」	815-6-13
史料5	覚(草案)	(1795)	9月	訓導士正朴正	小田幾五郎	継紙	1通	2紙	24.1×42.9	楮紙	(端裏書)「士正方方／此本書 館守様へ和解共ニ差出」	1123-157
史料6	覚(草案)	(1795)	9月日	訓導士正朴正	小田幾五郎	継紙	1通	3紙	24.7×97.1	楮紙	(端裏書)「乙卯起り之分 本書館守様へ有之」	1692
史料7	書簡	(1795)	10月18日	士正	幾五郎	切紙	1通	3紙	24.3×49.1	楮紙(朝鮮紙)		41-6
史料8	書簡	1796	丙辰6月28日	士正朴僉知(印)	小田幾五郎	継紙	1通	2紙	28.9×69.6	楮紙(朝鮮紙)	(端裏書)「士正」	1123-139
史料9	書簡	1796	丙辰6月29日	士正朴僉知(印)	幾五郎	切紙	1通	2紙	28.7×28.2	楮紙(朝鮮紙)		41-13
史料10	書簡	1796	丙辰7月23日	士正朴僉知(印)	小田幾五郎	切紙	1通	1紙	23.0×37.3	楮紙(朝鮮紙)		41-3
史料11	書簡	1797	丁巳4月11日	士正朴僉知(印)	小田幾五郎	継紙	1通	3紙	25.2×91.9	楮紙(朝鮮紙)		41-1
史料12	書簡	1797	丁巳閏6月28日	士正朴僉知(印)		切紙	1通	1紙	25.1×47.6	楮紙(朝鮮紙)	(端裏書)「士正分」	1123-143
史料13	書簡	1798	戊午5月初5日	士正朴僉知(印)	大通官	切紙	1通	1紙	20.0×36.8	楮紙(朝鮮紙)	(端裏書)「士正之分」	54-4-3
史料14	書簡	(1798)	5月24日	士正朴僉知(印)	大通官	継紙	1通	2紙	24.5×28.0	楮紙(朝鮮紙)		54-4-2
史料15	書簡	1798	戊午7月21日	士正朴僉知(印)	小田幾五郎	継紙	1通	2紙	25.0×32.2	楮紙(朝鮮紙)		54-4-4
史料16	書簡	1798	戊午11月19日	士正朴僉知(印)	小田幾五郎	継紙	1通	2紙	26.4×47.8	楮紙(朝鮮紙)	(端裏書)「士正分」	54-4-1
史料17	書簡	(1798)	30日	訓導(印)		切紙	1通	1紙	21.1×37.4	楮紙(朝鮮紙)		41-17
史料18	書簡	1798	戊午11月初吉日	景和朴主簿(印)	小田幾五郎	切紙	1通	1紙	16.7×42.3	楮紙	(端裏書)「午十二月朔日景和下来之書状」	54-5-2
史料19	書簡(控)	1800	庚申9月初10日	訓導印	大通官・吉松右助	継紙	1通	2紙	15.9×42.2	楮紙	包紙(1046-11-52-2-1)あり、(包紙)「別段極密書」、袖に墨書「本書館守ニ有之」	1046-11-52-2-1 1046-11-52-2-2
史料20	書簡	1800	申10月24日	伯玉崔僉正(印)	大通官	切紙	1通	2紙	(1紙)24.7×48.7、 (2紙)25.4×54.7	楮紙(朝鮮紙)		1123-159 1123-161

史料番号	表題	西暦	年月日	発給 (発信者)	受給 (受信者)	形態	員数	紙数	法量	料紙	備考	宗家文庫一紙物 管理番号
史料21	書簡	1800	庚申10月24日	華彦崔僉知 (印)	(小田幾五郎)	切紙	1通	1紙	24.8×42.4	楮紙 (朝鮮紙)	封筒 (1123-151-1) あり、(封筒)「小田幾五郎公前入納」「応封」、 「都来状 華」は異筆、封筒に2箇所ある封印影は崔王罔のもの、受給情報は封筒より採録	1123-151-1 1123-151-2
史料22	書簡	1801	辛酉3月初7日	訓導 (印)	(大通官)	切紙	1通	1紙	22.4×39.3	楮紙 (朝鮮紙)	封紙 (41-12-1) あり、(封紙)「大通官 公前 入納」「謹封」、 包紙に封印あり、封印の印影は誰のものか不明、受給情報は包紙より採録	41-12-1 41-12-2
史料23	書簡	1802	壬戌11月23日	永好堂主人	大通官	切紙	1通	1紙	23.6×28.3	楮紙 (朝鮮紙)	(端裏書)「用之分」	821-3
史料24	書簡	1802	壬戌12月22日	陽元玄判官 (印)	大通官	継紙	1通	2紙	23.2×25.5	楮紙 (朝鮮紙)		54-2-5
史料25	書簡	(1803)	12朝	永好堂	三伝語官	切紙	1通	1紙	23.5×25.6	楮紙 (朝鮮紙)	(端裏書)「正月十三日達 伯」	1123-146
史料26	書簡	1803	癸亥2月初6日	景和朴僉知 (印)		切紙	1通	1紙	33.5×45.6	楮紙 (朝鮮紙)	(端裏書)「景和朴僉知下来方不審 及遅滞候二付／態々賃銀を呉れ別飛 脚内々遣し／都方返書相達候事」	1123-154
史料27	書簡	1803	癸亥2月18日	陽元玄判官 (印)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継紙	1通	2紙	23.6×38.3	楮紙 (朝鮮紙)	(端裏書)「正月十九日之分／陽元方」	54-2-8
史料28	書簡	1803	癸亥2月24日	伯玉崔同知	小田幾五郎	切紙	1通	1紙	21.2×46.0	楮紙 (朝鮮紙)	(端裏書)「伯状公私之事」	1123-145
史料29	書簡	1803	癸亥2月26日	陽元玄判官 (印)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切紙	1通	1紙	23.3×28.9	楮紙 (朝鮮紙)	(端裏書)「閏正月廿六日達 陽元方」	54-2-4
史料30	書簡	1803	亥12月27日	陽元玄判官 (印)		切紙	1通	1紙	28.1×27.6	楮紙 (朝鮮紙)		41-8
史料31	書簡	1803	癸亥2月28日	景和朴僉知 (印)	小田幾五郎	切紙	1通	1紙	27.5×22.2	楮紙 (朝鮮紙)	(端裏書)「景和返事」	41-16
史料32	覚 (控)	(1803)	年月			切紙	1通	1紙	25.2×12.4	楮紙		42-19
史料33	書簡	1804	甲子4月26日	訓導 (印)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継紙	1通	2紙	23.4×37.6	楮紙 (朝鮮紙)	(端裏書)「陽元」	54-2-7
史料34	書簡	(1804)	(甲子)5月18日	玄判官敬天 (印)	小田幾五郎	切紙	1通	1紙	23.2×17.5	楮紙 (朝鮮紙)		41-18
史料35	書簡	1804	甲子7月初3日	華彦崔僉知 (印)		切紙	1通	1紙	22.4×41.5	楮紙 (朝鮮紙)	(端裏書)「華分 藍董官二付無拋 相願／其俟罷登候書状」	1123-150
史料36	書簡	1804	甲子11月18日	華彦崔同知 (印)	小田幾五郎	継紙	1通	2紙	24.5×38.7	楮紙 (朝鮮紙)	(端裏書)「華／取替之断」	1123-156
史料37	書簡	1805	乙丑2月13日	華彦崔同知 (印)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切紙	1通	1紙	22.3×32.3	楮紙 (朝鮮紙)		41-20

史料番号	表題	西暦	年月日	発給 (発信者)	受給 (受信者)	形態	員数	紙数	法量	料紙	備考	宗家文庫一紙物 管理番号
史料38	書簡	1805	乙丑3月16日	訓導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継紙	1通	2紙	22.9×37.2	楮紙(朝鮮紙)		48-13
史料39	書簡	(1805)	(乙丑)3月16日	華彦(印)		切紙	1通	1紙	21.2×41.2	楮紙(朝鮮紙)	封筒(48-16-1)あり、(封筒) 「両公前回上」	48-16-1 48-16-2
史料40	書簡	1805	乙丑6月22日	無名氏	小田幾五郎	継紙	1通	1紙	24.2×32.4	楮紙(朝鮮紙)	書簡文面は「一」から「十二」と墨書のある12枚に裁断された細長い紙片に書かれており、それを順番通りに並べ1枚の台紙に貼り付ける	61
史料41	書簡	1805	乙丑9月20日	賑恤廳別將朴聖奎(印)・李禪將	内田茂右衛門	切紙	1通	1紙	37.5×46.7	楮紙(朝鮮紙)	書簡の袖にも印あり	1123-158
史料42	書簡	1805	乙丑12月初4日	訓導(印)	伝語官	継紙	1通	2紙	22.7×48.8	楮紙(朝鮮紙)		48-6
史料43	書簡	1806	丙寅2月初2日	講定官	両伝語官	切紙	1通	1紙	23.7×13.7	楮紙(朝鮮紙)		48-8
史料44	書簡	1806	丙寅2月21日	敬天玄同知(印)	伝語官	継紙	1通	2紙	27.9×23.1	楮紙(朝鮮紙)		48-12
史料45	書簡	1806	丙寅2月21日	訓導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切紙	1通	1紙	23.7×25.7	楮紙(朝鮮紙)		48-2
史料46	書簡	(1806)	3月初2日	訓導	伝語官	切紙	1通	1紙	23.4×16.7	楮紙(朝鮮紙)		48-7
史料47	書簡	1806	丙寅3月初4日	講定官・訓導		継紙	1通	2紙	23.4×30.0	楮紙(朝鮮紙)		48-14
史料48	書簡	1806	丙寅3月初5日	講定官・訓導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継紙	1通	2紙	23.5×38.5	楮紙(朝鮮紙)		48-15
史料49	書簡	1806	丙寅3月初6日	敬天玄同知・陽元玄判官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継紙	1通	2紙	27.9×38.7	楮紙(朝鮮紙)		48-5
史料50	書簡	1806	丙寅3月14日	敬天玄同知・陽元玄判官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継紙	1通	2紙	27.9×48.8	楮紙(朝鮮紙)		48-3
史料51	書簡	(1806)	3月17日	敬天玄同知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継紙	1通	2紙	27.7×50.5	楮紙(朝鮮紙)		48-4
史料52	書簡	1806	丙寅3月17日	講定官・訓導	両伝語	継紙	1通	2紙	23.7×17.6	楮紙(朝鮮紙)		48-9
史料53	書簡	1806	丙寅3月23日	敬天玄同知・陽元玄判官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継紙	1通	2紙	23.4×44.4	楮紙(朝鮮紙)		48-1
史料54	書簡	(1806)	3月24日	玄同知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切紙	1通	1紙	27.7×20.9	楮紙(朝鮮紙)		48-10
史料55	書簡	(1806)	3月27日	講定官・訓導	両公	切紙	1通	1紙	20.0×31.0	楮紙(朝鮮紙)		54-2-3
史料56	書簡	(1806)	丙3月28日	敬天玄同知	両公	切紙	1通	1紙	27.8×29.9	楮紙(朝鮮紙)		41-2

史料番号	表題	西暦	年月日	発給 (発信者)	受給 (受信者)	形態	員数	紙数	法量	料紙	備考	宗家文庫一紙物 管理番号
史料57	書簡	(1806)	丙3月28日	敬天玄同知	両公	切紙	1通	1紙	22.0×40.3	楮紙(朝鮮紙)		41-10
史料58	書簡	(1806)	4月初1日	講定官・訓導		継紙	1通	2紙	27.7×28.2	楮紙(朝鮮紙)	(端裏書)「敬天陽元」	54-2-6
史料59	書簡	(1806)	4月初1日	講定官・訓導		継紙	1通	2紙	29.4×37.7	楮紙(朝鮮紙)		41-19
史料60	書簡	(1806)	4月初4日	敬天玄同知	両公	切紙	1通	1紙	27.7×31.0	楮紙(朝鮮紙)	包紙(41-28)あり、(包紙)「両公前回納」	41-28 41-5
史料61	書簡	(1806)	4月初4	敬天玄同知	両公	継紙	1通	2紙	27.7×40.7	楮紙(朝鮮紙)		54-2-2
史料62	書簡	(1806)	初4日	訓導		切紙	1通	1紙	22.1×40.5	楮紙(朝鮮紙)		54-2-1
史料63	書簡	1806	丙寅4月14日	訓導	小田幾五郎	切紙	1通	1紙	29.1×28.5	楮紙(朝鮮紙)		48-11
史料64	書簡	1806	丙寅4月21日	講定官・訓導	伝語官	切紙	1通	1紙	29.2×17.9	楮紙(朝鮮紙)	(こより)「接慰官下来方往復書状也」	54-5-1
史料65	書簡	1806	丙寅4月25日	講定官・訓導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	切紙	1通	1紙	29.2×29.2	楮紙(朝鮮紙)		54-5-4
史料66	書簡	1806	丙寅4月28日	講定官	小田幾五郎	切紙	1通	1紙	29.2×20.3	楮紙(朝鮮紙)		54-5-3
史料67	[伸言](控)	1806	丙寅6月			継紙	1通	4紙	30.7×167.2	楮紙	(端裏書)「寅六月御掛合」	1691
史料68	[伸言](控)	(1806)				継紙	1通	12紙	24.2×303.2	楮紙	(端裏書、朱書)「初発書立之分」	54-1-7
史料69	口陳(控)	1806	丙寅8月19日			継紙	1通	10紙	24.1×284.0	楮紙	(端裏書)「控」、(端裏書、朱書)「八月十九日之分」、管理番号823-28・819-14は一連の文書	823-28 819-14
史料70	口陳(草案)	(1806)				継紙	1通	8紙	24.9×251.6	楮紙	朱書きで加筆修正	1684
史料71	書簡	1806	丙寅10月初8日	講定官・訓導	小田・牛田	切紙	1通	1紙	24.3×31.3	楮紙(朝鮮紙)		54-3-6
史料72	書簡	(1806)	11月初7日	講定官	小田・牛田	継紙	1通	2紙	25.8×37.5	楮紙(朝鮮紙)		815-8-9
史料73	書簡	1806	丙寅至月21日	訓導	小田・牛田	切紙	1通	1紙	26.0×28.0	楮紙(朝鮮紙)		54-3-7
史料74	書簡	(1806)	至月24日	講定官・訓導	両伝語官	切紙	1通	1紙	28.8×12.3	楮紙(朝鮮紙)		54-3-5
史料75	書簡	1806	丙寅11月30日	玄同知	両伝語官	継紙	1通	2紙	25.7×14.6	楮紙(朝鮮紙)	包紙(54-3-1)あり、(包紙)「小田大通官公前」、(こより)「寅十月方十二月迄之分」	54-3-1 54-3-2
史料76	書簡	1806	丙寅12月初5日	講定官・訓導	両伝語官	切紙	1通	1紙	25.7×24.8	楮紙(朝鮮紙)		54-3-8

史料番号	表題	西暦	年月日	発給 (発信者)	受給 (受信者)	形態	員数	紙数	法量	料紙	備考	宗家文庫一紙物 管理番号
史料77	書簡	1806	丙寅12月初7日	講定官・訓導・別差	両伝語官	継紙	1通	2紙	25.0×29.7	楮紙(朝鮮紙)		54-3-4
史料78	書簡	1806	丙寅12月18日	陽元玄判官(印)	小田幾五郎	継紙	1通	2紙	23.0×52.6	楮紙(朝鮮紙)		54-3-3
史料79	伸言(草案)	(1807)				継紙	1通	4紙	24.3×103.8	楮紙	(端裏書)「下書/都船主方心得ニ いたし居候様ニと」	1688
史料80	書簡	1807	丁卯正月27日	訓導	小田幾五郎	継紙	1通	2紙	22.5×18.0	楮紙(朝鮮紙)		815-8-10
史料81	書簡	1807	丁卯元月29日	講定官	両大通官	切紙	1通	2紙	22.3×19.7	楮紙(朝鮮紙)		41-9
史料82	書簡	1807	丁卯正月29日	訓導	両大通官	継紙	1通	2紙	22.5×32.0	楮紙(朝鮮紙)		815-8-8
史料83	書簡	1807	丁卯元月晦日	講定官	両大通官	継紙	1通	2紙	22.4×29.4	楮紙(朝鮮紙)		815-8-6
史料84	書簡	1807	丁卯正月30日	訓導	両大通官	継紙	1通	2紙	22.5×24.7	楮紙(朝鮮紙)		815-8-7
史料85	書簡	1807	丁卯2月初9日	講定官	両大通官	継紙	1通	2紙	22.5×22.8	楮紙(朝鮮紙)		815-8-5
史料86	書簡	1807	丁卯2月15日朝	講定官(印)	両公	切紙	1通	1紙	22.5×20.0	楮紙(朝鮮紙)	815-8-3~8-10袋・紙縫にて一括、 (袋815-8-1)「諺文書付入 小田 幾五郎」、(紙縫815-8-2)「卯正 月より」	815-8-3
史料87	書簡	1807	丁卯2月15日	講定官(印)	両公	継紙	1通	2紙	22.5×30.7	楮紙(朝鮮紙)		815-8-4
史料88	書簡	1807	丁卯5月初1日	訓別		継紙	1通	2紙	26.0×34.4	楮紙(朝鮮紙)	(端裏書)「敬天明遠」	1123-155
史料89	書簡	1807	丁卯5月初1日	訓導	両大通官	切紙	1通	1紙	26.1×25.1	楮紙(朝鮮紙)	(端裏書)「外状」「当時 入用無 之分」	41-7
史料90	書簡	1807	丁卯5月21日	別差		切紙	1通	1紙	19.5×31.5	楮紙(朝鮮紙)		41-21
史料91	書簡	(1807)	6月初1日	訓導	両公	切紙	1通	2紙	17.5×36.3	楮紙(朝鮮紙)		41-14
史料92	書簡	(1807)		即 別差		切紙	1通	1紙	24.5×16.6	楮紙(朝鮮紙)	(端裏書)「明遠」	1123-140
史料93	[伸言](草案)	(1807)				継紙	1通	3紙	25.2×72.4	楮紙	(端裏書)「六月十三日御掛合」	1687
史料94	[伸言](草案)	(1807)				継紙	1通	4紙	28.0×110.8	楮紙	(端裏書)「御掛合之節諺文にて任 官へ為御見被成候管之下書」	1685
史料95	書簡(控)	(1808)	2月22日	訓導	久光市次郎	切紙	1通	1紙	25.1×18.5	楮紙		812-19-3
史料96	書簡(控)	1808	辰2月22日	訓導	小田	継紙	1通	2紙	25.3×49.5	楮紙	(端裏書)「辰二月廿二日夕達候 事」	812-19-4
史料97	書簡	年代不明	2月16日	訓導	(大通官)	切紙	1通	1紙	22.3×20.2	楮紙(朝鮮紙)	結び封にして墨書「大通官公」あり	48-17

史料番号	表題	西暦	年月日	発給 (発信者)	受給 (受信者)	形態	員数	紙数	法量	料紙	備考	宗家文庫一紙物 管理番号
史料98	書簡	年代不明				切紙	1通	1紙	26.4×35.1	楮紙(朝鮮紙)		1123-162
史料99	書簡	年代不明		即旋 別差	—	切紙	1通	1紙	20.5×26.0	楮紙(朝鮮紙)		41-15
参考1	覚	1760	庚辰4月17日	訓導崔僉正(印)・別差李僉正(印)	裁判(吉村橘左衛門)	継紙	1通	2紙	36.3×163.6	楮紙(朝鮮紙)		1096-6
参考2	覚(控)	1760	庚辰4月17日	訓導崔僉正印・別差李僉正印	裁判	継紙	1通	4紙	27.9×138.0	楮紙	管理番号1096-6の控	1123-152
参考3	書簡	1761	辛巳2月初7日	来儀崔判官(印)		切紙	1通	1紙	34.8×52.5	楮紙(朝鮮紙)		995-33
参考4	書簡	1802	壬戌9月初3日	訓導(印)	(大通官)	切紙	1通	1紙	29.3×42.0	楮紙(朝鮮紙)	宗家文書・記録類3・朝鮮関係・B16の挿入文書、封筒あり、(封筒)「大通官公前即納 謹封」、封印あり	挿入文書1
参考5	書簡	1803	癸亥4月初2日	訓導(印)	小田幾五郎	切紙	1通	1紙	29.3×17.4	楮紙(朝鮮紙)	宗家文書・記録類3・朝鮮関係・B55の挿入文書(元こよりにて綴じ込み)	挿入文書2
参考6	[覚]	(1803)				切紙	1通	1紙	25.3×5.0	楮紙	宗家文書・記録類3・朝鮮関係・B7の挿入文書、元付紙か	挿入文書3
参考7	覚	1803	癸亥6月初7日	三伝語官		継紙	1通	2紙	24.3×49.2	楮紙	宗家文書・記録類3・朝鮮関係・B7の挿入文書	挿入文書4
参考8	覚	1803	癸亥6月日	三伝語官		切紙	1通	1紙	25.2×25.0	楮紙	宗家文書・記録類3・朝鮮関係・B7の挿入文書	挿入文書5
参考9	[覚]	(1803)				切紙	1通	1紙	25.1×7.9	楮紙	宗家文書・記録類3・朝鮮関係・B7の挿入文書、元付紙か	挿入文書6
参考10	覚	(1803)	年月			切紙	1通	1紙	25.0×14.0	楮紙	宗家文書・記録類3・朝鮮関係・B7の挿入文書	挿入文書7
参考11	書簡(控)	1818	(文政元年5月19日)	(朝鮮語通詞広瀬与市)	(渡海訳官玄義温)	継紙	1通	2紙	39.7×106.3	楮紙		998-6
参考12	[口上書]	1823				切紙	1通	1紙	25.2×34.5	楮紙	包紙あり、844-9-2~3包紙一括、(包紙)「漂民死軀居棺ニ而送来付於長崎漂民より断書差出和解共」	844-9-1 844-9-3
参考13	[願]	1831	辛卯5月日	朝鮮国全羅道海南6名	伝語官	切紙	1通	1紙	24.0×16.0	楮紙	包紙あり、989-48-2の和解とともに包紙(989-48-1)一括	989-48-1 989-48-3

이들 전 112통의 서간류의 대부분은 1811년 조선통신가의 이른바 역지행빙(易地行聘), 즉 국서를 교환하는 장소를 에도(江戸)에서 쓰시마로 바꾸려는 제도변혁에 관한 이면 교섭에 관한 것들이지만, 관찬(官撰) 기록에서는 알 수 없는 새로운 사실을 전해주는 기중한 자료들이다. 그 속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자료인 사료 40에 대하여 다음 장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2. 자료 소개: 왜학역관(倭學訳官) 최경(백옥)(崔瑀(伯玉))의 한글 서간

사료 40은 1805년 9월 6日일에 수회매국(受賄賣國)의 죄로 왜관 앞에서 처형당하게 되는 왜학역관 최경(백옥)(崔瑀(伯玉))³⁾이 그 2개월여 전인 6월 22일에 유배지 전라도 장흥부(長興府)에서 왜관의 조선어대통사(朝鮮語大通詞)인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 앞으로 비밀리에 보낸 서간⁴⁾이다. 이 서간은 발신자의 이름이 노출되지 않도록 발신자란에 “무명씨(無名氏)”⁵⁾ 라고 적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서간을 12쪽의 가는 종잇조각으로 나누어 각 종잇조각을 꼬아서 가는 끈으로 만들어 그 끈을 엮전을 꿰는 끈처럼 보이게 만들어 소통사(小通事) 김우득(金又得)에게 운반하게 한 것으로, 극비리에 보내기 위해 용의주도한 배려가 이루어져 있다. 발신자인 최경(백옥)의 예사롭지 않은 각오를 그 형태에서도 충분히 살필 수 있는데 간역(奸訳)으로서 처형되게 되는 당사자의 직필 서간으로서, 관찬 기록에서는 알 수 없는 통신사 역지행빙 교섭의 새로운 일면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이하 그 내용을 소개하고 약간의 해설을 덧붙이려 한다.

2.1. 유배지에서 오다 이쿠고로에게 보낸 최경(백옥)의 한글 서간

우선 해당 서간의 번각, 현대어 번역을 아래와 같이 게재한다.

【번각】

—

小田幾五郎 公 前 上

그 스이 【隔】 5)公候 平安호오시며 【隔】 僉公 平安호오신잇가 僕은 長病 呻吟호

3) 조선시대 후기의 왜학역관. 1760년 생. 1795년(정조19) 식년시(式年試) 때에 잡과(雜科) 왜학(倭學)에 합격했다. 자는 백옥(伯玉), 본관은 청주(淸州)이다.

4) 尙馬宗家文庫史料—紙物[管理番号61]. 尙馬歷史民俗資料館編(2015)의 史料40.

5) 이 글에서는 자료 원문을 번각할 때, 경의나 겸양의 뜻을 나타내는 서법이 적용된 어절 앞에 다음과 같은 기호를 붙였다.

【擡】 : 경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대구법(擡頭法)이 적용된 것.

【移】 : 경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행법(移行法)이 적용된 것.

【隔】 : 경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격간법(隔間法)이 적용된 것.

【右】 : 겸양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른쪽에 적거나 작게 적은 것.

오니 切悶이오며 景和/ 華彦 兩公의 일은 다 꿈 맞기오니 欸혹히외다 公幹事는
近來 館中 事情이 眞言假

二

言이 다 館外에 漏通하여 士正公과 景和公은 公幹의 主掌하고 華彦과 僕은 追後
參/ 涉하였()다 하여 華彦公이 定配되지 되고 僕도 풀리지 못하오니 원통답 ”
히외다/ 講定官이 新差下往하다 하오니 부디 旧館司公이 即時 相接하여 말씀하기
를 丁巳春

三

問慰官 還渡後의 信使請來大差使가 나오게 하였더니 士正公이 別遣으로 느려와
서 하기를/ 朝廷分付가 信行을 十年停退하여 주면 丁卯年의는 信行이 馬州까지
드러가게 省弊하여/ 주마 하시니 十年退定 周旋을 하여니라 하기로 江戶의 多年
을 왕복하여 계요 ” ” 그뒤로 주선하고

四

戊午年의 士正公게 書付하여 주었시니 日本 君臣 上下는 그리 알고 잇기로 받서
馬州의 〔隔〕 國書奉/ 安할 大闕과 使臣居處할 館舍까지 ” 어시니 卽今 講定이 그
리 맞기는 다른 수 업다 하고 안져/ 시면 아모 녀녀 업스니 公네 생각은 엇더흔
지 맞기 事情을 모르고 걱정만 혼 듯하기로 이

五

리 密通하오니 짐작하오쇼셔 講定官이 하기를 그러면 이 말을 景和 華彦 兩公다
려는 엇지/ 아니 하였느니 하거든 이 말을 景和公다려 萬番이나 하여시되 그 말
은 맞기 못 할 말이라 하/ 고 단니고 華彦公도 그리 하기로 至今 未決하였다 하
오시며 또 못기를 景和 華彦兩公도 士正公과 同

六

議하였느냐 하거든 그는 兩公이 그 씩 任官들노 이셔시니 大掾은 짐작하여시려
니와 士正公이 公/ 幹의 主掌하여시니 엇지 可否를 하여시리 하고 僕도 欸예하였
느냐 하거든 그는 己未年이/ 야 느려와시니 엇지 欸예하여시리 하오쇼셔 또는 庚
申條 公木錢을 僕이 맞다 구쳐

七

하였더니 그 돈을 僕이 미양게 맞고 公幹의 欸예하였다 의심들 하오니 그 다이
말을 못/ 거든 그는 그 씩의 江戶의셔 生蓼上品 五六斤을 구하기로 그 돈을 맞져
구하여 왔노라 하옵/ 僕이 公幹의 欸예 아니 혼 줄만 發明하면 즉금 귀향 풀녀
 僉中의 首任이 되게시니 萬事太

八

平하오려니와 이 특별티로 못 되면 華彦과 僕의 일이 또 엇지 될지 모르고 公幹
도 엇지 거출/ 어 같지 모로오니 公幹 말씀을 특별히 디로만 하고 馬州 興凶이
여기 이스니 生死를 맞비 판단하/ 여 달나 하고 苦爭하면 自然 順成하올이다 士
正公의 書付 잇다 하니 보자 하거든 예부터 公幹이

九

말노 흐지 書付 업느니라 호오쇼셔 回答하시되 ぬ게 전하라 쓰지 말고 小紙의
두어 卒 적/ 으되 보닌 것 卒시 바다노라 호고 公의 套書만 쳐 봉하여 주오쇼셔
僕의 套書는 서울 잇/ 기로 못 쳐 보닌느이다 이리 편지 흐는 거시 彼此死罪오되
大事기로 불게호고 弔別호오니 이 일

十

을 内外의 同生 갖흔 스이라도 알게 마오시고 此札即爲付丙호오쇼셔 公幹 말씀
은 弔別흔 되로/ 만 호고 날마다 相接을 청하여 결단하라 보치면 自然 順成之道
는 쥬션호는 도리 이스니 녀녀 말/ 고 직축하게 호읍 暫上 乙丑 六月廿二日 無名
氏 頓

十一

追書 이 편지를 又得이 하여 전하나 체계 편지 흐기를 公의게 바들 것 이스니/
이 돈 피차가 公의 거시니 보람으로 전호고 달나 하라 하여시니 그리 알아 말을
잘/ 되답호읍 人心을 모로기로 이 피차가 편지라 말은 아니 하여시니 又得이 알
되지 마음 쏘는

十二

官家의셔 廉聞이 大段하여 士正 景和公이 書付호고 華彦과 僕도 追後 書付호였
다 호고 아/ 모쥬록 日本사름을 重賞을 주고 書付를 어더너려 한다 하니 館中 사
름들을 마이 신척/ 호고 公의게 잇는 公幹文書들을 집이 두게 호읍 즉금 모양은
士正公의 말을 公体로 너여야 順成호올이다

【현대어역】

一

오다 이쿠고로 님께

그간 귀하께서는 평안히 지내시고 다른 분들과 평안하십니까? 저는 오랜 병으로
신음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경화(景和)(박치검(朴致儉)), 화언(華彦)(최국정
(崔國禎)) 양 공에 대한 일은 다 꿈에서도 생각지 못한 것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그 공무(통신사 역지행방에 관한 외교 교섭)에 대한 것은 최근 (왜관) 관내의
사정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二

다 관외로 새어나가 사정(士正)(박준한(朴俊漢))공과 경화(박치검)공이 그 공무
를 맡고, 화언(최국정)공과 저는 그 후에 가담했다고 하여 화언(최국정)공이 유
배까지 가게 되고 저도 풀려나지 못하니 원통하고 답답합니다. 강정관(講定官)
(현의순 경천(玄義洵 敬天))이 새로이 임명되어 (서울에서 동래(東萊)로) 내려
갔다고 하니 부디 구관수(舊館守) (도다 다노모(戶田頼母))님은 즉시 만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정사(丁巳)(1797년) 봄에

三

문위관(問慰官)(서정 박준한)이 대마도로 가서 조선으로 귀국한 후에 통신사 청래대차사(請來大差使)가 대마도에서 부산으로 나오게 하였더니 서정 박준한 공이 별견(別遣)으로서 (서울에서 동래로) 내려와서 말하기를 ‘조선 조정이 분부하기를 (일본측이) 통신사를 10년 연기해 준다면 (조선측은) 정묘(丁卯)(1807년)에는 통신사가 (에도까지가 아니라) 대모도까지 들어가도록 생폐(省弊)하여(부담을 덜어) 주마 하시니 10년 연기 주선(周旋)을 하여내라’ 하였기로 에도(江戶)에 다년간 왕복하여 겨우겨우 그대로 주선하고

四

모로(戊午)(1798)년에 사정(박준한)공에게 문서로 보내주었으니 일본의 군신(君臣) 상하는 모두 그렇게 알고서 벌써 대마도에 국서(國書)를 봉안(奉安)하는 궁전과 사신이 거처하는 관사(館舍)까지 만들었으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강정(講定)은 그리 할 수 밖에 도리가 없다“고 하시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아무런 염려도 없는데 귀하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밖(조선측)의 사정을 모르시고 걱정만 마시는 듯하기로 이

五

리 비밀로에 알려드리로니 짐작하십시오. 강정관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 말을 경화(박치검), 화언(최국정) 양 공에게는 어찌서 말하지 않았는가” 라고 한다면 “이 말을 경화(박치검) 공에게 몇 번이나 하였는데 ‘그 말은 밖으로 드러내어 말하지 못할 말이라’고 하였으며, 화언(최국정) 공도 그렇게 말하였기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미해결 상태입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또 (강정관이) 물어보기를 “경화(박치검), 화언(최국정) 양 공도 사정(박준한)공과 동

六

의(함께 의논)하였느냐” 라고 하거든 “그것은 양 공이 그 때 임관(任官)들로서 계셨으니 대강은 짐작하셨겠지만, 사정(박준한)공이 그 공무를 책임지고 맡고 계셨으니 어찌 가부를 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십시오. (강정관이) “저(최경 백옥)도 가담했는가” 라고 하거든 “그것은 기미(己未)(179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서울에서 동래로) 내려왔으니 어찌 가담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십시오. 또한 경신(庚申)(1800)년 조(條) 공목전(公木錢)을 제가 맡아서 개별적으로 처리

七

했는데 그 돈을 제가 “미양계(みやげ, 선물)”로 받고 그 공무에 가담했다고 (조선측에서는) 의심하고 있으니 그에 관계된 이야기를 (강정관이) 묻거든 “그것은 그 때에 에도 막부에서 생인삼 상품 5, 6근을 구하였기로 그 돈을 맡겨서 조달해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제사 그 공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만 변명하면 즉시 유배에서 풀려나 역관들 중에서 수임(首任)이 될 것이니 만사 태

八

평하겠지만, 이 편지대로 되지 못하면 화언(최국정)과 저 또한 어찌 될지 모르고

그 공무에도 어떤 식으로 지장이 생길지 모르므로 그 공무 이야기는 이 편지에 쓴 대로만 하시고 “대마주의 흥흥(興凶)이 여기에 달려 있으므로 생사를 빨리 판단하여 주십시오” 라고 계속해 다투어 요구하면 자연히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강정관이) “사정(박준한)공이 일본측에 보낸 문서가 있다고 하니 보자”고 하면, “옛부터 공무라는 것은

九

구두로 하는 것으로 문서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이 편지에) 회답을 하실 때에는 누군가에게 전하라고 쓰지 마시고(수신자 이름을 쓰지 마시고) 작은 종이에 두어 자 적으시기를 “보낸 것은 잘 받았다” 라고 하고 귀하의 날인만 하고 봉해 주십시오. 제 도장은 서울에 있으므로 날인하지 못하고 보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쌍방 모두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지만 중요한 일이므로 되돌아보지 않고 보냅니다. 이 일

十

을 내외에 형제와 같은 사이라도 알리지 마시고 이 편지는 즉시 불태우십시오. 그 공무 이야기는 알려드린 대로만 하시고 매일 (강정관을) 만나기를 청하여 “결단을 하라”고 재촉하시면 자연히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길로 주선할 방법이 있으므로 염려 마시고 재촉하게 하십시오. 우선 드림. 을축(乙丑)(1805) 6월 22일에 무명씨(無名氏) 돈(頓)

十一

추신 이 편지를 우득(又得)⁶⁾을 하여금 전하도록 합니다만, 그에게 편지로 알리기로는 “귀하(오다 이쿠고로)에게서 받을 것이 있는데 (그 대금인) 이 돈은 어쨌든 귀하(오다 이쿠고로)의 것인데 (귀하가 이 돈을 수량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표를 (저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라”고 하였으므로 그렇게 아시고 말을 잘 대답해 주십시오.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는 것이라 이것이 어찌 되었든 편지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므로⁷⁾ 우득(又得)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또한

十二

官家에서 염문(廉聞)(은밀히 사정을 물음)이 대단하여 “사정(박준한), 경화(박치검)공이 문서를 (일본측에) 보내고 화언(최국정)과 저(최경 백옥)도 이어서 문서를 (일본측에) 보냈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일본 사람에게 큰 선물을 주어 그 문서를 얻어내려고 한다고 하니, (왜관) 관내 사람들에게 엄령을 내리고 귀하에게 있는 공무 문서들을 깊숙이 (보관해) 두도록 하십시오. 현재 상황으로서는 사정(박준한)공의 이야기를 겉으로 드러나게 하여서야 순조롭게 성취될 수 있을

6) 소통신(小通事) 김우득(金又得)을 가리킴. 尙馬宗家文庫史料—紙物[812-8]에는, 「小通事^{ウツツ}又得と申者(소통신 김우득이라는 사람)」 이라고 하고, 또한 오다 이쿠고로가 쓴 「通訳酬酌」 卷6 마지막 장에도 「小通事^{ウツツ}金又得といふ者を以(소통신 김우득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라고 하고, 그의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다.

7) 즉, 이 서간이 편지라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각 종잇조각을 꼬아서 가는 끈으로 만들어 그 끈을 엮전을 꿰는 끈처럼 보이게 만들어 배달인인 소통신(小通事) 김우득(金又得)에게는 그것이 편지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돈이다”라고 말하고 전달한 것으로 생각된다.

것입니다.

2.2. 해설

이 서간의 발신자는 “무명씨(無名氏)”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으로부터 을축(乙丑)년(1805) 6월 22일 당시 전라도 장흥부(長興府)에 유배되어 있던 전 왜학훈도(前倭學訓導) 최경 백옥(崔瑀(伯玉))이 유배지에서 보낸 것임이 확실하다. 최경은 단삼미수(單蓼未收)의 죄과로 인해 1803년부터 전라도 장흥에 유배되어 있었다.

이 서간의 二 부분에 “강정관(講定官)(현의순 경천(玄義洵 敬天))이 새로이 임명되어 (서울에서 동래(東萊)로) 내려갔다고 하니 부디 구관수(舊館守) (도다 다노모(戸田頼母))님은 즉시 만나셔서 말씀하시기를”라고 되어 있는데, 오다 이쿠로고가 조선통신사 역지행빙 교섭의 전말을 기록한 [御用書物控(草案)] (對馬宗家文庫史料一紙物[54-10]) 을 보면, 1805년 6월 17일 조에, 「訓導入館、申聞候者、華彦弥代り新講定官敬天玄僉知十一日都出立と申來、廿二三日可致下着(훈도가 입관해서 말하기를 (전강정관)최화언이 드디어 교체되어서 신강정관 경천 현첨지가 11일에 서울을 출발했다는 연락이 왔으니 22일, 23일쯤에 (동래에)도착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같은 해 6월 24일조에 「兩訳入館 姓名書館守様 講定使様へ差出ス(양역(훈도와 별차)이 입관해서 (신강정관의) 성명을 적은 서류를 관수님과 강정사님께 제출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25일조에는 「新講定官下來入館ニ付 通詞家ニ幾五郎罷出祝詞共相濟候上 (中略) 幾五郎方へ講定官 訓導相見へ申聞候者 (後略) (신강정관이 (동래에서 왜관에) 내려와서 입관하였기에 통사가 있는 건물에 오다 이쿠고로가 나와서 축사를 서로 주고 받은 후에 (중략) 이쿠고로 거처에 강정관과 훈도가 와서 말하기를(후략)」라고 되어 있어, 신강정관 현의순 경천(玄義洵 敬天)이 을축(乙丑)년(1805) 6월 11일에 서울을 출발하고 같은 해 6월 23일쯤에 동래에 도착하고, 같은 해 6월 25일에 왜관에 입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을축(乙丑)년(1805) 6월 22일자로 작성된 이 서간은 바로 신강정관 현의순 경천(玄義洵 敬天)이 서울을 떠나 동래로 향하고 있던 시기에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御用書物控(草案)] 1805년 7월 2일조에는, 「伯玉方より極密書狀相達し大意 土正代ニ御用成熟ニ至居候段可被相答存候へハ何も滞り候事無之 又拙者拜借之公木ハ人參を以夫〃御差引可申と之約束ニ候と御答へ可被下と申來り(後略)(최경 백옥에게서 비밀 편지가 왔다. 그 대강 뜻은 사정 박준한 시기에 (통신사 역지행빙에 관한) 공무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일본측이 조선측에) 대답하시면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며, 또한 제(최경 백옥)가 빌린 공목은 인삼으로써 각각 상쇄, 청산한다고 약속했다고 대답해 달라는 것이다(후략)」라고 하고, 이 서간의 부합되는 기술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서간이 1805년 7월 2일에 오다 이쿠고로에게 도달한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 서간의 내용은 신임 강정관 (현의순 경천)이 동래에 착임한 후에 왜관 구관수

(旧館守) 강정사(講定使) 도가 다노모(戸田頼母)등과 협의를 시작할 때에, 1798년에 일본과 조선 간에서 이루어진 이른바 통신사무오약정(通信使戊午約定)을 두고 사정 조사가 행해질 것이지만, 그 때에 다음과 같이 (일본측이 조선측에) 대답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 1) 통신사 역지행빙을 허가한 무오약정(戊午約定)은 이미 박준한(사정) 시기에 확정되어 있던 것이다.
- 2) 최경(백옥) 자신은 기미년(1799)이 되어서야 비로소 동래로 내려왔으므로, 무오약정(1798년) 책정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 3) 최경(백옥)이 일본측으로부터 맡아 둔 경신(庚申)(1800)조의 공목전(公木錢)은 에도막부가 희망하던 생인삼 상품 5, 6근의 조달자금으로 건넨 것이다.

즉 이 세가지 점을 제시함으로써 최경(백옥) 자신이 결백함을 제시하려고 한 것인데, 그 중 1)과 2)는 사실을 말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3)의 경신조공목전 건에 대한 것은 명백히 허위 주장이다. 이하 그 각각의 점에 대해 약간의 설명을 더하려 한다.

우선 1)에 대해서는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1940)pp.687-709에서 상세하게 논해지고 있는 바와 같이, 무오약정이 왜학약관 박준한(사정)에 의해 성립을 보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참고로 최경(백옥)의 서간을 수령한 오다 이쿠고로도 그에 대한 단장 속에서 “(역지행빙)이 박준한(사정) 때에 확정되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답하고 있다. 즉 [御用書物控(草案)] (対馬宗家文庫史料一紙物[54-10]) 1805년 7월 2일 조에는, 「伯玉方より極密書狀相達し 大意 土正代ニ御用成熟ニ至居候段可被相答存候へハ何も滞り候事無之 又拙者拝借之公木ハ人參を以夫〃御差引可申と之約束ニ候と御答へ可被下と申来り 使伏兵ニ忍ひ居 急〃返詞申吳候様申聞候付 幾五郎より 仰迄も無之 土正節ニ相極居候事申ニも不及(後略)(최경 백옥에게서 비밀 편지가 왔다. 그 대강 뜻은 사정 박준한 시기에 (통신사 역지행빙에 관한) 공목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일본측이 조선측에) 대답하시면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며, 또한 제(최경 백옥)가 빌린 공목은 인삼으로써 각각 상쇄, 청산한다고 약속했다고 대답해 달라는 것이다. 그 편지를 전달한 자는 복병소에 숨어 있어서 빨리 답장을 달라고 전해 왔기에 오다 이쿠고로에게서 물론 박준한(사정) 때에 (통신사 역지행빙이) 확정되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후략)」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2)의 최경(백옥)이 역지행빙 교섭에 가담했다는 시기에 대해서인데, 이것도 이 서간에 서술되어 있는 바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최경(백옥)이 별차(別差)로 부임하여 도착한 것은 「倭館館守日記」에 의하면, 1799년 8월 6일이며, 무오약정(1798년)이 성립된 이후이다. 그리고 최경(백옥)이 실제로 역지행빙 교섭의 멤버로 추가된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별차 임기 만료 전후인 1800년 8월 말부터 9월경으로 추정된다. 즉, 「御内密書物控」 (対馬宗家文庫[記録

類Ⅲ/朝鮮關係/B/17]) 의 1800년 8월 24일 조에는,

訓導⁸⁾東萊より下来直ニ入館仕 幾五郎居所へ参申聞候者 御用便り段々相延恐怖至極ニ存候 併近⁹⁾之内御左右も可有之哉と夫而已相待居候 最早拙者訓導勤者 来三 四月迄ニ候得者 間もなく彼是心遣ニ候 然処当別差⁹⁾近⁹⁾及交代上京ニ可至就夫兼而も心入も違候哉と相見 既ニ近比迄も様々心遣いたし候様之義 各ニも御存之通ニ候得共 拙者は迄実意を以致出會諸般懇切致介抱候ニ付而者 昨今者拙者心底をも致感候哉と相見 一旦之心得恥入候 機しも顕れ却而近比ハ其身も実意を以拙者へ出合候 元来発才ニ有之善ニも早く移り悪ニも早く傾キ候氣質ニ候得者一ヶ年中之勤ニ而日本向御時躰も少々ハ致合点 昨今者出立を替候而別差勤をも不欠御用身ニ引請候躰ニ而 拙者言ニ随ひ何事茂無割申聞候 此前御用勤度口氣時々相顕レ候得共 莫大之御用容易ニ難相談 其節⁹⁾品能相しらひ置候故 前後之事共考候処 御用ニ立させか度所より 畢竟ハ事情披り見たる事哉と相聞候 就夫誠ニ恥敷事ニ候得共 今判事中内御用ニ可立者堂上堂下共ニ無之 右御用華彦 拙者兩人ニ而も何れ相濟不申 さらバとて外ニ相加へ談し候程之人物差当無之候 貴様と拙者との間繕候事も無御座 打明心底をも相咄見候 右之通故此別差御用ニ差加へ候ハ、可然存候 無怨在被仰聞可被下候 是偏ニ御用向太切ニ存知候処より同官中之事迄致内評候と申聞候ニ付 私より相答申候者 御左右相待候者御同然之事御用太切ニ思召 御兩人ニ而御不足有之筈ニ候 当別差公之事委御咄被成 私ニも此間諸勤向相考候処 一ヶ年ニも相成候ニ付 一寸日本向ニも為被馴哉と見請候 御同官中之儀御懇話有之 此人如何ニ候哉と御談し申程之人先ハ心附無之 当別差公之儀ハ其元様たに差支無之候ハ、内々御障り被遊候儀も面り有御座問敷と致恐察候 併館司様御使公へ御内意仕見可申と申候処 訓導より亦々申候者 実外ニ人無之 当別差上京ニも臨 殊更拙者代り訓導も可相勤模様ニ候間 右之通致了簡候事故 御内意申上呉候様申聞候 言下ニ別差入来仕 訓導見掛 幾五郎方へ参り当話濟や不濟 訓導より別差事御用ニ相加へ如何可有之哉と新ニ申聞候故 如何様可然事ニ被存候 併館司様御使公へ右介相談 御内意可申上と申候ニ付 訓導より右介相招キ御兩所より宜敷御内意被下候様委申候 別差身分無御障思召候ハ、 府使へハ勿論都表華彦方へも申越 其筋ニ被申入候様可致候間申聞 先安心社候躰ニ而後方可致対面と申聞罷歸り申候

右之通別差相咄候故書載仕 奉入御用控候 以上

八月廿四日

小田幾五郎 吉松右介

(훈도 박치검(경화)가 동래에서 (왜관으로) 내려와서 바로 입관하고 오다 이쿠고로 거쳐에 와서 말하기를 “(통신사 역지행빙) 공무에 관한 (에도 막부에서의) 편지가 점점 지연되어서 대단히 걱정입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 내밀히 연

8) 박치검 경화(朴致儉 景和)를 가리킨다.

9) 최경 백옥(崔瑀 伯玉)을 가리킨다.

락이나 있을 것이라고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 제 훈도 임기도 내년 3, 4월까지이어서 얼마 안 남았으므로 이것저것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차 최경(백옥)은 멀지 않아 교체되어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하여 이전과는 마음가짐도 달라진 것 같아서 이미 요새도 여러모로 신경을 쓰는 모양은 귀하 등도 아시는 바입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진심으로 대하고 여러모로 정성껏 돌봐 준 결과, 최근에는 저의 속마음도 감지하는가 봅니다. 이전의 그릇된 생각을 부끄러워하는 징조도 보이며 오히려 요새는 그 자신도 진심으로 저를 대합니다. 원래 재치가 있어서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바로 영향을 받는 성격이므로 1년 동안 별차로 근무해서 일본 외교의 현황도 좀 이해하고 요새는 태도를 바꾸어서 별차 근무도 빠짐없이 일을 맡아 하고 있는 모양이며, 저의 말에도 잘 따르고 모든 일에 대해서 친밀하게 말해 줍니다. 지난번부터 (여지행빙) 공무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말투가 가끔 보였습니다만 막중한 공무이라 쉽게 의논하기도 어려워서 그 때마다 적당히 응답해 두었는데, 전후 사정을 생각해 본즉, 공무에 참여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마 사정을 살펴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지금 판사(判事, 왜학역관)들 중에서 (여지행빙) 공무에 참여할 만한 사람이 당상관이든 당하관이든 없고, 그 공무를 최국정(화언)과 저(박치검 경화) 2명만으로는 아무래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도 그 밖에 가해서 의논할 만한 사람은 지금은 없습니다. 귀하(오다 이쿠고로)와 저(박치검 경화) 사이에서 걸꾸밀 것도 없어서 속마음을 밝혀서 말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으므로 그 별차(최경 백옥)을 그 공무에 참여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로지 공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동관들에 대한 내부 평가도 말씀해 드렸습니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제(오다 이쿠고로)가 대답하기를 “에도막부에서의 편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2 분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기에 지금 별차 공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그 간에 (별차가) 일하는 모습을 살펴 왔더니 1년이나 되었으므로 좀 일본 외교에도 익숙하신 것 같습니다. 동관 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셔서 이 사람은 어떠냐고 의논해 볼 만한 사람은 지금은 없으며, 지금 별차 공에 관해서는 귀하만 지장이 없으시다면 일본측에서 지장이 되는 일은 우선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수님과 사자님께 의향을 여쭙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더니, 훈도가 다시 말하기를 “사실은 따로 사람이 없고 지금 별차도 서울에 올라가게 되고 특히 저의 후임 훈도도 맡게 될 모양이므로 이와 같이 생각한 셈이니, (관수님과 사자님의) 의향을 여쭙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별차가 왜관에 입관했는데 훈도가 발견하고 이쿠고로 거쳐에 와서 인사가 끝나자마자 훈도에게서 “별차를 공무에 참여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새로이 묻기 때문에 (오다 이쿠고로가) “과연 지당한 줄 압니다. 그러나 관수님과 사자님께 요시마쓰 유수케(吉松右

介)를 통해서 여쭙어봐야 합니다” 라고 하였더니, 훈도가 요시마쓰 유수케를 불러서 “2 분께 의향을 잘 여쭙어봐 주십시오. 별차에 대해서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동래부사에게는 물론, 서울에 있는 최국정(화언)에게도 전달하고 담당 부서에 연락하도록 합니다” 라고 하며, 우선 안심한 모양으로 “나중에 만나자”고 하고 갔다.

이와 같이 별차(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으므로 기록해 두어서 「御用控」에 적어넣는다. 이상

8월 24일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 요시마쓰 유수케(吉松右介)

라고 되어 있어서, 훈도 박치검(경화)로부터 별차 최경(백옥)을 역지행빙 교섭의 멤버로 넣는 건에 관해서 오다 이쿠고로에게 타진하고 관수와 사자에게 의향을 여쭙어보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같은 책 같은 해 9월 11일 조에는,

訓導亦〃申候者 右御用士正引統私華彦承り居候得共 若も病氣彼是之節甚以心遣ニ有之 御用太切ニ存候所より頃日別差事兩人へ相咄候ニ付御承知可被下候 近来前方と違心入共宜見請 殊更同官中右御用可勤程之人面り無之 年輩等も段々宜相成候間 同前相勤度段相咄候処 御聞宜キ模様ニ而大ニ仕合申候 何れ近日内同道仕緩〃と可申上との趣相述 響應相濟罷歸り候事

(훈도가 다시 말하기를 “이 공무를 박준한(사정)에 이어서 저(박치검(경화))와 최국정(화언)이 담당해 왔지만 만약 병들거나 그럴 때에 대단히 걱정입니다. 공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지난번에 별차에 관해서 2 분께 말씀해 드렸으니 알고 계시겠지만, 요새는 이전과 달리 마음가짐등도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동관들 중에 공무를 맡을 만한 사람이 지금은 없고, 나이 등도 점점 알맞게 되므로 같이 담당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지장이 없으신 모양이어서 다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무튼 가까운 시일 내에 같이 와서 천천히 말씀해 드립니다” 라고 하였다. 대접 등이 끝나고 갔다.)

라고 되어 있고, 또한 같은 책 같은 해 9월 말일 조에는,

旧別差伯玉崔僉正下来 館司様為御暇乞何角御礼申上候事 伯玉より私儀不省之身分重大之御用掛ニ相加り 誠ニ誠心を尽し相働キ可申段呉々申上 頃日右御挨拶ニ罷上候得共 尚又出立ニ臨是等之儀御咄申上罷登候上 華彦相談し御順便相尽し可申候 且頃日訓導心附之品有之 都表へ飛脚差立候日積凡明日相達候筈ニ御座候付 府使へ申出下地委兩人より相咄申候間 二日ニ者訓導下来持參可仕段申上候事 館司様より右ニ應シ御返答有之

(구별차 백옥 최침정(僉正)이 (왜관으로) 내려왔다. 관수님께 작별 인사를 해서 여러모로 감사 말씀을 드렸다. 최경(백옥)에게서 “저는 어리석은 자이지만

중대한 공무에 참여하게 되어서 꼭 정성을 다하여 일하겠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최국정(화언)과 의논하면서 공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훈도가 (일본측에) 선물할 물건이 있어서 서울로 보행(歩行)을 보냈는데, 그 일정 예정이 오늘, 내일 중에 도달할 터이므로 동래부사에게 말씀드려서 사전 준비로 양인(훈도와 저”으로부터 이야기해 두므로 2일에는 훈도가 (왜관으로) 내려와서 지참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 관수님에게서 그에 대응하고 대답하셨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 시기에 최경(백옥)이 역지행빙 교섭 구룹에 추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의 소위 경신조공목전(庚申條公木錢) 건에 대해 알아보자. 이 경신조공목전 건에 대해서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1940)p.725는,

「講定訳官朴俊漢に交付した銅二千斤、同崔瑀·崔国禎に交付した公木二百九十一同余については、対州藩は単に取引上一時の融通に過ぎないと主張し、朝鮮国は之を以て賄賂の意味を有する贈与と認めて居る。恰も現代に於ける瀆職事件に類するものがあるが、朴俊漢等の死亡者を除き、両崔等はいづれも収賄の事実を自白して居るので、対州藩の主張は根拠なきものと云はなければならない。然れども朝鮮国が対州藩主及び関係藩吏を逮捕審問する権限なきを幸として、飽くまで贈賄の事実を否定し、遂に表面上対州藩に何等不正の行為なく、講定訳官が同藩を欺いて、多額の物貨を騙取し、その代償として、偽造書契を交付したと云ふ架空の事実を成立せしめるのに成功した。

(강정역관 박준한에게 교부한 동(銅) 2000근, 그리고 최경, 최국정에게 교부한 공목(公木) 291동(同)여에 대해서는, 대주번(対州藩)은 단순히 거래상의 일시적인 유통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조선은 이를 뇌물 수뢰의 의미를 갖는 증여로 인정하고 있다. 마치 현대의 독직(瀆職)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는데, 박준한 등의 사망자를 제외하고 양 최씨들은 둘 다 뇌물 수수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대주번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다행히도 조선쪽에 대주번주(対州藩主)와 관계 번리(藩吏)를 체포 및 심문할 권력이 없다는 점에 기대어 어디까지나 뇌물 증여 사실을 부정하여 드디어 표면상으로는 대주번은 아무런 부정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강정역관이 대주번을 속여 거액의 재물을 사취하고 그 대가로 위조 서계(書契)를 교부했다고 하는 가공의 사실을 성립시키는 데 성공했다.)」

라고 말하며, 뇌물이라고 단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경(백옥)이 오다 이쿠고로에게 극비리에 보낸 이 서간에서 “경신(庚申)(1800)년 조(條) 공목전(公木錢)을 제가 맡아서 개별적으로 처리했는데 그 돈을 제가 “미양계(みやげ, 선물)”로 받고 그 공

무에 가담했다고 (조선측에서는) 의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단사자 간의 연락에 있어서도 역시 뇌물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맡아 두었다고 말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적어도 대마번(對馬藩)의 입장에서 보면, 뇌물로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된다.

애초에 이 경신조공목전 건은 대마번 쪽에서 주도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최경(백옥)의 강한 요망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쓰시마 종가문고 일지물(一紙物) 사료 중에 임술(壬戌)년(1802) 3월 및 5월에 최경(백옥) 등이 제출한 경신조공목전 차용에 대한 의뢰 각서가 있으므로 이하에 제시한다.

對馬宗家文庫史料一紙物[815-6-2]

覺

一 僕等職在 〔隔〕 兩邦周旋之任 〔議聘公幹雖爲 〔隔〕 兩邦周旋〕 每事不無用費 成事之道。 <故自初至今 自辨所費其數不少 而來頭所幹亦當預慮 然此等說話極爲歉愧而第念> 近來 〔隔〕 貴國木代磨勘之三年 陳置 使同死花之盈階 庚申條公木三百同 手標爲先 出給於僕等使之長袖善舞 而今年秋採後 辛酉條磨勘依例入來則 木代収殺自爲翌年 而周旋所費自出於其中 眞所謂不費之惠 僕等生光千萬幸甚 而右者手標四五年自有區處事

壬戌三月二十七日 伯玉 崔同知 〔印〕

華彦 崔僉知 〔印〕

景和 朴主簿

舊館司 尊公

(각서

一 저희들의 직업은 양국에서 주선(周旋)하는 임무에 있습니다. (조선통신사) 의빙(議聘)에 관한 공무는 오로지 양국의 주선하는 일인데, 매사에 비용이 없어서는 이루기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변(自辨)으로 쓴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후의 일에 관해서는 미리 배려를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극히 안 좋은 일입니다만, 근래 귀국에 보내 들여야 할 공목(公木) 대삼(代蔘) 3년분이 죽은 꽃이 섬들에 찬 듯이 (회수 불능의 불량 채권이 되어) 미납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 경신(庚申)(1800)조 공목(公木) 300동(同)의 어음을 우선 저희들에게 출급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비용에 충당하려고 합니다. 올해 추삼(秋蔘)이 나온 후에 신유(辛酉)(1801)조 미납 삼(蔘)이 들어오면 공목 대삼(代蔘)과 상쇄하여 익년분으로 하면 그 공무 주선의 비용은 그 중에서 나오니 바로 불비지혜(不費之惠), 즉 비용 부담이 없이 남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며, 저

희들의 생광(生光)도 되고 천만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어음은 4, 5년 동안 맡
기시고 그 후에 각각 개별적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임술(壬戌)(1802) 3월 27일 백옥 최동지 【인】

화언 최첨지 【인】

경화 박주부

구 관수님께)

對馬宗家文庫史料一紙物[815-6-3]

端裏書：公木借之

扣

覺

一 議聘公幹雖爲【隔】兩邦周旋 每

事不無用費 而後成事之道

故自初至今 自辨所費其數

不少 而來頭所幹亦當預慮

然此等說話極爲歉愧而第

念 近來【隔】貴國入送木代磨勘

之三年 陳置使同死花之盈

階 庚申條公木未収三百同

肆拾伍疋拾柒尺 手標爲先出

給於僕等使之長袖善舞 而

今年秋採後 辛酉條磨勘

人蔘依例入來則 木代蔘収

殺自爲翌年 而周旋所費

自出於其中 真所謂不費

之惠 僕等生光千萬幸甚

而右者手標公幹完成之日

自有區處事

壬戌五月二十一日 【右】 伯玉 崔同知

【右】 華彥 崔僉知

【右】 景和 朴主簿

(공목 차용서의 사본

각서

一 (조선통신사) 의빙(議聘)에 관한 공무는 오로지 양국의 주선하는 일인데,
매사에 비용이 없어서는 이루기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변(自
辨)으로 쓴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후의 일에 관해서는 미리 배
려를 해주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극히 안 좋은 일입니다만, 근래 귀국에 보내 들여야 할 공목(公木) 대삼(代蔘) 3년분이 죽은 꽃이 섬돌에 찬 듯이 (회수 불능의 불량 채권이 되어) 미납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 경신(庚申)(1800)조 공목(公木) 300동(同) 45필(疋) 17척(尺)의 어음을 우선 저희들에게 출급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비용에 충당하려고 합니다. 올해 추삼(秋蔘)이 나온 후에 신유(辛酉)(1801)조 미납 삼(蔘)이 들어오면 공목 대삼(代蔘)과 상쇄하여 익년분으로 하면 그 공무 주선의 비용은 그 중에서 나오니 바로 소위 불비지혜(不費之惠), 즉 비용 부담이 없이 남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며, 저희들의 생광(生光)도 되고 천만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어음은 그 공무가 완성된 날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임술(壬戌)(1802) 5월 21일 백옥 최동지
 화언 최침지
 경화 박주부)

즉, 조선에서 대마번에 지급해야 할 공목이 3년분 지체되어 회수불능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 중 경신(庚申)년(1800) 조 공목 300여동만큼의 어음을 출급해 주면, 거기에서 역지행빙 추진을 위한 운동자금을 변통할 수가 있다, 그 미납분 공목은 대마번으로서는 어차피 회수불능의 불량채권이므로 그 어음을 출급한다고 해도 실로 불비지혜(不費之惠), 즉 비용을 들이지 않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그 어음은 역지행빙 성취시에는 구처(區處, 개별적으로 처리), 즉 역지행빙 성취의 공적을 감안, 상쇄하여 처리해 달라, 라는 내용이다.

이 최경(백옥)의 경신조공목전(庚申條公木錢) 차용 요구는 도다 다노모(戶田頼母) 및 나카가와 오쿠에몬(中川奧右衛門)에 의해 즉시 대마번에 전달되어 허가되었다. 「文化信使記録 御国書留」慶應冊子番号一の 1802년 6월 1일 조에는 이하와 같이 되어 있다.

講定方差急候事情 先達而より追”御用掛之判事共より頼母迄申出候塩梅も有之候処 去冬【移】

上使御位階并朝鮮王來翰御請取方之兩事被仰出 則及御掛合候処 無滯順便ニ至候 就夫御用掛判事共より申出候様子を以者 兎角都表より講定官罷下御用向表ニ打出し取計候様無之候而者 御丈夫と申ニ難至事故 此儀至而不容易候得共掛り之判事共踏わたり差働 順便ニ至候得者 此上之安心ニ付 今程專周旋仕居候処 都表之模様も順便ニ有之 則其次第此節真文を以申出 右ニ付而者 彼国之風習ニ而 彼是用費夥敷 自力ニ而之償難相届 不得已公木拝借之義 書付を以願出 右兩通之真文戶田頼母より差越 中川奧右衛門よりも同様之趣申越候 公木之儀 御繰合第一之品不容易段者勿論ニ候得共 御用向弥此節彼国表向打出しニ相成候得者 此上之御丈夫ニ至候事故 則願之事情御取揚被下 庚申條未収公木

式百九拾壹束三拾七疋式尺式寸之分拝借被仰付候旨 頼母方え監物より及差図
奥右衛門方え右同様之趣及達

但 真文ニ者三百束四拾五疋拾七尺と有之候処 此元ニ而御勘定所及吟味候員
数と喰違有之 其次第頼母方えも申越 渡方之儀 代官方え可被申越旨 御勘定
奉行所え相達

右之次第江戸表大森繁右衛門幾度格左衛門方え申越 真文写をも差越

一 今此公幹中講定官差出下来之道 尤為重
難 而 〔隔〕 兩國之大事遷延歲月極為悶迫故 與
華彦崔僉知 景和朴主簿 傾渴謀策 殫盡死
力 講定官從速下来期於周旋 而近見京奇
則 公議順便 如是書付 勿為閑慮千萬幸甚
壬戌五月二十一日 伯玉 崔同知 印
舊館守 尊公

右真文和解

覚

一 講定官差下方之道 格別手入之儀と存候 併兩國之
大事多年及遲滯候段 当惑千万之事に候得者 華彦
崔僉知 景和朴主簿同然心力之限示談いたし
講定官早々 下来ニ相成候様 専周旋いたし居候 尤近比
都便り有之候処 朝議順便ニ御座候 少しも御氣遣被成
間敷候

壬戌五月廿一日 伯玉 崔同知
旧館守 尊公

覚

一 議聘公幹雖為 〔隔〕 兩邦周旋 每事不無用費
而後成事之道 故自初至今 自辨所費其數
不少 而來頭所幹 亦當預慮 然此等說話極
為歉愧 而第念 近来 〔隔〕 貴國入送木代磨勘
之三年 陳置使同死花之盈階 庚申条公木
未収參百同肆拾伍疋拾柒尺 手標為先出
給於僕等 使之長袖善舞 而今年秋採後 辛
酉条磨勘人參依例入來則 木代參収殺自
為翌年 而周旋所費自出於其中 真所謂不
費之惠 僕等生光千萬幸甚 而右者手標公
幹完成之日 自有區處事

壬戌五月二十一日 伯玉 崔同知

華彦 崔僉知

景和 朴主簿

右真文和解

覺

一 議聘御用之儀者 專兩國之周旋事と申内 每事用費
無之候而者 難成事ニ而御座候 初發より是迄内證にて
相談候筋 不一形儀ニ候得者 此以後之處 是又兼而心遣致置
不申候而難叶事候 夫ニ付此等之儀申出候者 甚如何敷儀ニ
存候得共 近来貴国え入送之公木代參三ヶ年分未収ニ
相成居候内 庚申条未収三百同四拾伍疋拾七尺まつ
我〃え手形御出被下候ハ、夫を以用費取償 今年秋參
出立候上 辛酉条未収參入來候處ニ而 翌年之分ニ相立テ
候得者 右御用之用費者其内より出候と申ものにて 我〃
大ニ仕合申儀ニ候 素り右当分御渡被下候手形前ハ 御用
成就之上 夫〃取しらへ方有之儀と存候

壬戌五月廿一日 伯玉 崔同知

華彦 崔僉知

景和 朴主簿

((조선통신사)강정(講定)에 관한 일을 서두르고 있는 사정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몇 번이나 그 공무를 맡은 왜학역관들에게서 도다 다노모에게 전달해 온 바 있는데, 지난 겨울에 (조선통신사 때의) 에도막부에서 대마도로 파견되는 사자의 위계(位階) 및 조선왕에게서 보내온 서한을 일본측이 어떤 방식으로 받는가, 그 2가지 점에 대하여 에도막부에서 조선측으로 말씀하셔서 즉시 의논이 되었는데, 순조롭게 결정되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그 공무를 맡은 왜학역관들이 말하기를 “아무래도 서울에서 강정관(講定官)이 파견되어서 조선통신사에 관한 그 공무가 공식적으로 의논되도록 하여야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이기도 하나 그 공무를 맡은 왜학역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해서 순조롭게 성취된다면 더없이 안심할 수 있으므로 지금 힘써 주선(周旋)하고 있는데, 서울의 상황도 순조로운 모양입니다”라고 하며, 그 내용을 이번에 진문(真文, 한문)으로 써서 제출해 왔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풍습으로서 여러모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자기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공목(公木) 차용에 대하여 문서로써 신청해 왔습니다. 그 2가지 진문 문서를 도다 다노모(戸田頼母)에게서 (대마도로) 보내왔고 나카가와 오쿠에몬(中川奥右衛門)에게서도 같은 내용의 보고가 (대마도로) 왔습니다. 공목(公木)은 가장 중요한 물품으로서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는 하나, 조선통신가에 관한 그 공무가 이제야 드디어 그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의논하게 된다면 더없이 안심할 수 있으므로 즉시 그 요청을 (대마번이) 허가해 주셔서 경신(庚申) 조 미납 공목(公木) 291속(束) 37필(疋) 2척(尺) 2촌(寸) 분을 대여해 주도록 도다 다노모에게 (회계 담당자인) 간부쓰(監物)에게서 지시를 했습니다. 나카가와 오쿠에몬에게도 같은 내용의 지시를 했습니다.

다만, 진문(真文) 문서에는 300속(束) 45필(疋) 17척(尺)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대마도)에서 (회계담당 부서인) 간조쇼(勘定所)에서 조사해 본 수효와 어긋나므로 그 내용을 도다 다노모에게도 전달하였고 대여해 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왜관의 무역 담당자인) 다이칸(代官)들에게 지시를 하도록 간조(勘定) 부교쇼(奉行所)에 전달하였다.

위의 내용을 에도에 있는 오모리 시게에몬(大森繁右衛門), 기도 가쿠자에몬(幾度格左衛門)에게 전달하고, 진문(真文) 사본도 보냈다.

一 今此公幹中講定官差出下来之道 尤為重
 難 而 〔隔〕 兩國之大事遷延歲月極為悶迫故 與
 華彦崔僉知 景和朴主簿 傾渴謀策 殫盡死
 力 講定官從速下來期於周旋 而近見京奇
 則 公議順便 如是書付 勿為閔慮千萬幸甚
 壬戌五月二十一日 伯玉 崔同知 印
 舊館守 尊公

위의 진문(真文)의 일본어역

각서

一 강정관(講定官)을 파견하는 것은 각별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국간의 대사가 다년간 지체되는 것은 천만 난처한 일이므로 화언 최침지, 경화 박주부하고 같이 힘써 의논하여 강정관이 속히 파견되도록 오로지 주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에서 연락이 왔는데, 조정 의논이 순조로운 모양이니,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술(壬戌)(1802) 5월 21일 백옥 최동지
 구관수 님께

覺

一 議聘公幹雖為 〔隔〕 兩邦周旋 每事不無用費
 而後成事之道 故自初至今 自辦所費其數
 不少 而來頭所幹 亦當預慮 然此等說話極
 為歉愧 而第念 近来 〔隔〕 貴國入送木代磨勘

之三年 陳置使同死花之盈階 庚申条公木
 未収參百同肆拾伍疋拾柒尺 手標為先出
 給於僕等 使之長袖善舞 而今年秋採後 辛
 酉条磨勘人參依例入來則 木代參収殺自
 為翌年 而周旋所費自出於其中 真所謂不
 費之惠 僕等生光千萬幸甚 而右者手標公
 幹完成之日 自有區處事
 壬戌五月二十一日 伯玉 崔同知
 華彦 崔僉知
 景和 朴主簿

위의 진문(真文)의 일본어역
각서

一 (조선통신사) 의빙(議聘)에 관한 공무는 오로지 양국의 주선하는 일인데, 매사에 비용이 없어서는 이루기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변(自辨)으로 쓴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후의 일에 관해서는 미리 배려를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극히 안 좋은 일입니다만, 근래 귀국에 보내 들여야 할 공목(公木) 대삼(代參) 3년분이 미납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 경신(庚申)(1800)조 미납 공목(公木) 300동(同) 45필(疋) 17척(尺)의 어음을 우선 저희들에게 출급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비용에 충당하려고 합니다. 올해 추삼(秋參)이 나온 후에 신유(辛酉)(1801)조 미납 삼(參)이 들어오면 익년분으로 하면 그 공무 주선의 비용은 그 중에서 나오니 저희들은 천만 다행입니다. 물론 그 어음은 그 공무가 성취되면 각각 개별적으로 조사해서 처리할 것으로 압니다.

임술(壬戌)(1802) 5월 21일 백옥 최동지
 화언 최첨지
 경화 박주부)

이 경신조공목전의 어음은 임술(壬戌)년(1802) 6월 18일에 실제로 최경(백옥)에게 교부되었다. 「御内密真文扣」[記錄類Ⅲ-朝鮮關係-B-14-3]에는 그 때의 수령 각서의 사본이 수록되어 있다.

同日我 〃 迄差出候手形 旧館守様へ差出置扣
 覺
 一 庚申条公木式百玖拾壹同參拾柒疋貳尺
 柒寸
 右者公幹浮費所用次 同手標取用 而

公幹完結後 自有區處事

壬戌六月十八日 伯玉 崔同知 印

華彦 崔僉知 印

景和 朴主簿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吉松右助 僉公

(같은 날에 우리들에게 제출된 어음을 구관수님(도다 다노모)께 전달했는데 그 사본

각서

一 경신(庚申) 조 공목(公木) 291동(同) 37필(疋) 2척(尺) 7촌(寸)

이는 공무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어음을 받아서 쓰는 것임. 단 그 공무가 완결된 후에는 개별적으로 처리할 것임.

임술(壬戌)년(1802) 6월 18일 백옥 최동지 인

화언 최첨지 인

경화 박주부

오다 이쿠고로

우시다 켄베이

요시마쓰 유스케 침공께)

그런데, 위에 게재한 임술(壬戌)년(1802) 3월 27일자 경신조공목전(庚申條公木錢) 차용 의뢰각서(對馬宗家文庫史料一紙物[815-6-2])의 발신자는 최경(백옥), 최국정(화언), 박치검(경화) 3명으로 되어 있지만, 최경(백옥)과 최국정(화언) 2명에 대해서는 날인이 되어 있는 데 반해, 박치검(경화)의 날인이 없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御内密真文扣」[記錄類Ⅲ-朝鮮關係-B-14-3]에 수록된 임술(壬戌)년(1802) 6월 18일자 수령각서 사본에 대해서도 최경(백옥)과 최국정(화언) 2명에게는 날인 표시가 있는데, 박치검(경화)에게는 날인 표시가 없다. 이는 이 시기에 박치검(경화)가 상경하여 동래(東萊)에 없었기¹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경(백옥)과 최국정(화언)이 박치검(경화)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경신조공목전(庚申條公木錢) 차용 건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御用書物扣」(通詞小田幾五郎倭館にて訳官と申談候記録, 통사 오다 이쿠고로가 왜관에서 조선측 왜학역관들과 의논한 기록) [記錄類Ⅲ-朝鮮關係-B-55]의 계해(癸亥)년(1803) 3월 3일(또는 2일?) 조에,

10) 「御内密書物控」[記錄類Ⅲ-朝鮮關係-B-14-2]에 의하면, 박치검(경화)은 1802년 3월 5일에 서울로 떠났다. 박치검(경화)가 다시 동래로 내려온 날짜에 대해서는 사료에 따라 다르게 기술되어 있지만, 박치검(경화) 자신이 쓴 한글 서간인 對馬宗家文庫史料一紙物[41-16](對馬歷史民俗資料館編(2015)과 松原孝俊·他(2018)의 史料31)이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에 의하면 조선력(朝鮮曆)의 계해(癸亥) 2월 27일, 즉 일본력(日本曆)의 교와(享和) 3년(1803) 윤(閏) 1월 27일이다.

景和後ニ残居三人之相尋申候者 先刻公木拝借と被申聞候者 如何之事ニ候哉と申候ニ付 我々より其事御上京之節御聞不被成候哉 扱々驚入候事ニ御坐候 右御用[御尽?]被成候付 伯玉公 華彦公 其元様 三名ニ而 公木參百束餘御拝借被成候 伯玉公より御通し無くと申候[?]者不相濟事ニ候と申候処 いや今日迄何之事も不承 尤頃日講定使様ニ而幾五郎より公木之事聞候哉 米式拾俵銅手洗壺組之事聞候哉と者申聞候得とも其[折?]者気分も不宜委敷問合不申 不思議之事と一ト通存候而已ニ御坐候 夫者誠ニ不存寄事ニ御座候 御用を相働候もの事成熟之上者 〔隔〕上より思召有之事ニ候 其前少しニ而も拝借等之事 不面白筋ニ候と申候付 米式拾俵者 〔隔〕御国より御目錄承り候事ニ御座候か 近[年?]も相滞候哉と申候得者 如何様夫ハ無相違相達居申候ニ付 然者其儀御礼被仰出可然事ニ候を 御失念と相聞候 [?]之節御急被成間敷と申置候事

華彦を幾五郎居所へ呼寄 我々三人相談申候者 公木拝借之儀如何ニ而今日迄景和と公へ御咄不被成事 不審之儀ニ御座候 景和と公者此事多年之相働 拝借之出来にも右専之筋より相叶候事ニ御坐候と申候処 華彦相答候者 右公木之儀 伯玉不殘受込ミ 是を以講定官も被差下 古館守様ニ而講定相濟候様相成 右講定官下来之一儀ニ付 誠ニ夥敷費有之 其身も右之成行ニ相成候事故 伯玉受込候[分?] 拙者より相咄し可申様無之と申候ニ付 又々我々より何れ伯玉公より御咄し有之様御計可被成候と申候処 罷上り候上委く相咄し可申段申聞候事

(박치검(경화)가 뒤에 남아 있는 3명에게 물어보기를 “아까 공목(公木) 차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기에 우리들에게서 “그 건에 대하여 상경하실 때에 못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 공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최경(백옥)공, 최국정(화연)공, 귀하의 3명으로 공목(公木) 300여 속(束)을 차용하신 것입니다. 최경(백옥)공으로부터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 좋은 일입니다.” 라고 말하였더니, “아니, 오늘까지 아무런 이야기고 못 들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강정사(講定使 도다다노모)님을 뵈었을 때에 오다 이쿠고로에게서 공목(公木)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쌀 20섬, 동(銅) 대야 1 짝에 관한 말씀을 들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 때는 몸 상태도 좋지 않아서 자세히 물어보지 않고 이상한 일인 줄로만 대충 알았을 뿐입니다. 그것은 실로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공무에 관여하는 자는 그 공무가 성취된 후에는 나라에서 배려가 있을 터인데, 그 전에 조금이라도 차용과 같은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으므로 “쌀 20섬은 대마변에서 목록을 받으셨습니까? 근년에도 지체되어 있습니까?” 라고 말한즉, “하긴, 그것은 틀림없이 도착했습니다” 하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당연한데, 잊으신 줄로 알았습니다.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해 두었다.

최국정(화언)을 오다 이쿠고로 거쳐로 불러서 우리들 3명으로부터 의논해서 말하기를 “공목(公木) 차용 건에 대해서 왜 오늘날까지 박치검(경화)공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박치검(경화)공은 이 공무에 다년간 관여하셔서 차용이 허가된 것도 그러한 공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더니, 최국정(화언)이 대답하기를 “그 공목(公木)에 대해서는 최경(백옥)이 전부 맡아 그것으로써 강정관(講定官)도 부임하게 되었고 고관수(도다 다노모)님과 강정(講定)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강정관(右講定官) 아래(下來) 건에 대하여 실로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최경(백옥) 자신도 아시다시피 투옥되어 버렸으므로 최경(백옥)이 맡은 것에 대하여 저로부터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기에, 또 다시 우리들로부터 “언젠가 최경(백옥)공에게서 말씀해 주시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동래에 올라가서 자세히 말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라고 되어 있으며, 새 강정관(講定官)으로서 동래에 부임한 박치검(경화)가 그 동안 경신조공목전(庚申條公木錢) 차용 건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사실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오다 이쿠고로가 최경(화언)을 추궁한 바, “그 공목전(公木錢)은 최경(백옥)이 전부 맡아 그 공작자금에 의하여 박치검(경화)이 새 강정관으로서 부임할 수 있게 된 것이다”라고 대답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 의하여, 경신조공목전(庚申條公木錢) 차용 건은 역지행빙 교섭의 조선측 그룹 상사에 해당하는 박치검(경화)에게조차 보고하지 않고 최경(백옥)과 최국정(화언) 2명의 독단전행으로 진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신조공목전(庚申條公木錢) 차용 건에 대해서는 전제한 최경(백옥)의 한글 서간에서도 “또한 경신(庚申)(1800)년 조(條) 공목전(公木錢)을 제가 맡아서 개별적으로 처리했는데 그 돈을 제가 ‘미양계(みやげ, 선물)’로 받고 그 공무에 가담했다고 (조선측에서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듯이 조선측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었다. 최경(백옥)의 서간이 오다 이쿠고로에게 도착하기에 한발 앞서 새 강정관(講定官) 현의순(경천)(玄義洵 敬天)이 부임하여 도착했는데, 즉시 왜관으로 가서 경신조공목전(庚申條公木錢) 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御用書物控(草案)] (對馬宗家文庫史料一紙物[54-10]) 1805년 6월 29일 조에는,

「善兵衛病氣ニ付 兩人¹¹⁾共ニ彼方ニ而委く御嘯可申と 幾五郎より申候ニ付 彼方へ参り候上 講定官より申候者 公木之書付御吟味被下候哉と申候ニ付 則是ニ致持参御覽可被成候也 控を為見候内 御代官方より請取之節差出有之書付之写 青柳孫七より遣候付 此通り之事ニ候と申候也 兩人より申候者 前訊ニ差出候書付よりハ此書付たりと有之 先者宜キ事ニ候 委キ書付[ハ?]先見合可申と申 穩ニ取扱候振合と相見候 引続兩人より申候者 土正ニも公木百束拝借

11) 강정관(講定官) 현의순 경천(玄義洵 敬天)과 훈도(訓導) 현식 양원(玄弼 陽元).

有之 銅貳拾称拝借も有之たる哉ニ聞へ居候 其書付も可有之 御尋可被下と申候故 幾五郎より相答候者 如何様公木百束計も御受取為被成模様粗承候 乍去此事者已前被執之代銅余計ニ滞り居候内 土正之受取高第一と相聞候 其等之事情渡海官之節勘定所ニ毎〃被申出 判事中難儀之事情難被成御見捨 右百束ニて被執之未極只之分全く御済ニ相成候との様ニ承り候 此方ニ不拘筋委細不存候 銅貳拾称之事ハ渡海官ニ付存外之物入有之 勘定所ニ内〃願ひ有之 帰鮮之上又〃下来候ハ、 人参二十斤共 又者 紬木綿之類之品ニ而 返済可致と有之 其後追〃入送ニ至り候哉と存候 是等之取引勘定所代官所之事ニ而 是又委細ニ存し不申と答候処 兩人より丁度咄之通 旧被執之筋ニ而 百束被受取候との噂も有之 銅も差引ニ相成居候ハ、 夫等之書付御穿鑿被下候道共ハ無之哉 右之通ニ候へハ 土正之云分貫キ可申候 拙者共先官之事死後ニ而も汚名を為蒙候者好候事ニ無之候と申候付 最早年も経ち候上 死後之事ニ付 当所ニ扣可有之様もなく 御勘定所仰向渋難之儀ニ候へハ 急〃御穿鑿も届間敷考候と申置候事 御用成熟之条〃都表ニて追〃御承知も可被成候へ共 為念完定之分 詳ニ見へ候様 是ニ一点を以致書載候 寛〃御覽可被成候 起りハ則是ニ御座候易地省弊御書翰之往復是ニ候 其外追〃之条〃御引合御覽可被成候通 訓導引合ニして不殘[後?]之分為見申候所 兩人共委致披見 何れにしても是を以論し候事等に至り候而者 不相濟儀ニ候と申聞ケ 別而為相変体も無之 暫して幾五郎より兩人へ相咄候者 公木拝借之事此度第一ニ御尋被成候者 如何之御底意ニ御坐候哉と申見候処 講定官より土正 景和 伯玉 華彦 此銘〃御用之儀右之通ニ御掛合仕 此通之事ニ候 土正 景和者 古人ニ相成居 後兩人首尾合不宜候 他国之財物を公用ニ託し 其身共得徳ニ致し候者 誠信之間不相濟事ニ付 朝議有之候者 他国ニ対し我国之者不埒筋ニも不存冥キ国等と被汲取候而者 誠信之道不安事ニ候との朝議ニ決し 此筋を明白ニ調へ候様ニとの儀ニ候と申候付 幾五郎より頃日も訓導公へ御咄し申候通 前任之人之事此方より無[崖?]取計候体ニ至り而者 御一統之為ニも如何敷被存候 右伯玉公 華彦公御兩人之儀 萬〃曖昧ニ而死罪等と申ニ決候時ハ 此方様よりも御掛合被遊候儀も可有之哉と致恐察候 其訳者は迄追〃御極被遊候手継を致し候人之儀も御坐候へハ御極メニ相成居候条 生前へ御引合可被置事哉と考候 此方ニ而者 何も角も貫通致し無此上御安心ニ御座候 乍去今之俣無事[?]御掛合ニ不至事[?]相願候と申候所 如何様其通りニ候と兩人共ニ相答 問も無く訓導一人御代官方へ参り 後ニ而講定官相咄候者 先刻貴様之咄尤ニ存候 訓導者景和之事を厭ヒ只順便ニと候得共 朝廷之本意先刻申候通り御誠信通候様ニ被存候内ニ 右之銘〃多数之拝借いたし候との噂都ニ聞へ 様〃疑心も生候へ共 其筋を糺し候上 速ニ相成可申 朝廷之朝議者十二して八九順路ニ決し居候 左も無之時者 我国之者他国を欺キ候と申もの 一国之恥辱ニ至 両国間無此上大切之場無之段能〃相貫キ居候 此等之事慥ニ有之候ニ付 拙者罷下り 御用不順之機共見へ候へハ 拙者罷下おめ〃〃と相勤可申哉と

爰を以御察し可被下 萬〃一御手入之事ニ至り候ハ、先拙者を貴様達手ニ掛可被申 土台を氣遣不被申様ニと存候へ共 訓導へケ様之事迄申候而者 餘り打明ヶ不宜 態と大切そふニ為見掛ヶ居候 貴様方強キ事をも被申候も随分宜有之候内チ〃へ少しも不拘様して相働丸メ可申と申聞候事

(“우시다 쟈베이(牛田善兵衛)는 몸이 아프기 때문에 2분(현의순 경천과 현식 양원) 모두 그쪽으로 가서 자세히 이야기합시다” 라고 오다 이쿠고로로부터 말했으므로 그쪽으로 간 후에, 강정관(講定官) 현의순(경천)으로부터 말하기를 “공목(公木)의 문서는 조사해 주셨습니까” 라고 하기에 “바로 여기에 지참했으니 보십시오” 라고 해서 문서 사본을 보여주면서 “다이칸(代官)에게서 최경(백옥)이 공목(公木)을 받았을 적에 제출한 문서의 사본을 아오야기 마고시치(靑柳孫七)로부터 보내 왔는데 이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양인으로부터 말하기를 “전임 역관에게 제출한 문서보다는 이 문서는 문제가 없고 우선 좋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문서는 우선 보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온화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서 양인으로부터 말하기를 “박준한(사정)에게도 공목(公木) 100속(束) 차용이 있고 동(銅) 20칭(称) 차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문서도 있을 터이니 조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기에, 오다 이쿠고로로부터 대답하기를 “과연 공목(公木) 100속(束) 정도 받으셨던 모양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전에 피집(被執 외상 매출)의 대동(代銅)이 많이 지체되었던 가운데 박준한(사정)이 받아야 할 액수가 가장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박준한(사정)이 대마도로 도해관(渡海官)으로서 갔을 때에 대마번의 회계담당 부서인 간조쇼(勘定所)에 여러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왜학역관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내버려두지 못해서서 그 100속(束)으로써 피집(被執)의 미납분을 모두 청산하도록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된 일이 아니기에 자세히는 모릅니다. 동(銅) 20칭(称)에 관해서는 도해관(渡海官)이 되었기 때문에 뜻밖에 비용이 많이 들었으므로 간조쇼(勘定所)에 사사로이 신청했는데 ‘조선에 돌아간 후에 다시 동래로 내려올 때에 인삼(人蔘) 20근 또는 명주二十斤共 又者 명주, 무명 등 물품으로 변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후에 차차 들여보내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에 관한 일은 간조쇼(勘定所)와 다이칸쇼(代官所)가 담당하는 일이라서 이것 또한 자세히는 모릅니다” 라고 하였더니, 양인으로부터 “마치 말씀하신 대로 이전의 피집(被執)과 관련해서 100속(束) 받으셨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동(銅)도 청산되었다면 그에 관한 문서를 조사해 주실 수 없으십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박치검(사정)의 주장이 통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전임 왜학역관에 대하여 사후(死後)라 하더라도 오명(汚名)을 입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였기에, “벌써 세월이 흐른 데다가 돌아가신 후이라 여기에 사본 등이 남아 있지도 않을 터이니 간조쇼(御勘定)가 곤란해 하실 것 같으면

쉬이 조사도 못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 두었다.

(오다 이쿠고로가) “통신사 역지행빙 건이 성숙(成熟)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서울에서 수시로 듣고 계셨겠지만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하여 (역지행빙이) 이미 완전히 결정되었다는 것을 자세히 보여주도록 여기에 정리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천천히 보십시오. 그 건의 발단은 여기에 있는 역지행빙(易地省弊)에 관한 서한(書翰) 왕복, 이것입니다. 그 밖에 그 후 수시로 논의한 조목을 대조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훈도를 끌어와서 모두 나머지 것들도 보여주었더니 양인 모두 자세히 살펴보고 “아무래도 이것을 가지고 처벌하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특별히 이상한 모양도 없었다. 오다 이쿠고로로부터 양인에게 말하기를 “공목(公木) 차용 건에 대하여 이번에 첫 번째로 물어보신 것은 어떠한 속셈이 있으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즉 강정관(講定官)으로부터 “박준한(사정), 박치검(경화), 최경(백옥), 최국정(화언)이 각각 역지행빙 공무에 대하여 그와 같이 일본과 교섭을 해서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박준한(사정)과 박치검(경화)는 사망했고 나머지 양인은 평이 좋지 않습니다. 타국의 재물을 공용에 가탁하여 자기들의 이익으로 삼는 것은 성신지간(誠信之間)으로 안 되는 일이므로 조정에서 의논이 있었는데 타국에 대하여 우리나라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것도 모르고 어두운 나라라고 평가받게 되어서는 선신지도(誠信之道)에 불안한 일이라고 조정 의논이 결정되어 그 건을 명백히 조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으므로 오다 이쿠고로로부터 “지난번에도 훈도공에게 말씀드렸듯이 전임 역관들에 대하여 일본측에서 함부로 대처하게 된다면 귀국(조선) 입장으로서도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경(백옥)공, 최국정(화언) 2분에 관해서 만일에 애매하게 사죄 등으로 결정된다면 일본측 강정사(도다 다노모)님으로부터도 항의하시게 될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 까닭은 지금까지 차례로 결정하시는 수속을 담당했던 사람이기도 하므로 결정하신 조목들에 대하여 생전에 인계해 두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측 으로서는 모든 것이 결정되었으므로 더없이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이대로 무사히 끝나고 양국간의 논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과연 그렇습니다” 라고 양인 모두 대답하였다. 이윽고 훈도만 혼자서 다이칸(代官)에게 갔고 그 후에 강정관(講定官)이 말하기를 “아까 귀하가 하신 말씀은 지당합니다. 훈도는 박치검(경화)에 관한 일을 기피하고 오로지 순조롭기만 바라고 있습니다만, 조정의 본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신(誠信)을 지키려고 하시는 와중에 아까 말한 사람들이 많이 차용했다는 소문이 서울에 들려와서 여러모로 의심도 생겼는데, 그 건을 처리한 후에 속히 (역지행빙이) 이루어질 것으로 조정의 의논은 심중팔구 순조롭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타국을 속였다는 것이며 일국지치욕(一國之恥辱)이 되어 양국간의 더없이 심각한 상황이 된

다는 것은 (조선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임명되어 동래로 내려온 것입니다. 역지행빙 공무가 순조롭지 못한 징조가 보였더라면 제가 동래로 내려와서 염치없이 일하겠습니까? 그런 사실로 미루어 추측해 주십시오. 만일에 양국간의 논쟁이 된다면 먼저 저를 귀하들이 죽여주십시오. 기본은 걱정 마십시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훈도에게 그러한 일까지 말해버리면 너무나 철어놓아서 안 좋으니 일부러 심각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귀하들이 강변하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일본측에는 조금도 폐를 끼치지 않도록 처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라고 되어 있으며, 강정관(講定官) 현의순(경천)(玄義詢 敬天)과 훈도 현식(양원)(玄斌 陽元)에게 오다 이쿠고로가 공목(公木) 차용 문서를 보여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오다 이쿠고로가 공목(公木) 차용 문서를 강정관(講定官) 현의순(경천) 등에게 간단히 보여주고 만 것은 최경(백옥)의 한글 서간을 받기 이전이었다는 점에 더 붙어, 대마번으로서의 어디까지나 최경(백옥)의 요구에 응한 일시적인 채무에 지나지 않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오다 이쿠고로는 최경(백옥)의 서간에 대한 답장 속에서도 “공목(公木) 건에 대해서는 다이칸쇼(代官所)의 문서에도 ‘후일에 구처(区処) 개별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적혀져 있으므로 걱정할 것 없다” 라고 답하고 있다. 즉, [御用書物控(草案)] (對馬宗家文庫史料一紙物[54-10]) 1805년 7월 2일 조에는,

伯玉方より極密書狀相達し 大意 土正代ニ御用成熟ニ至居候段可被相答存候へハ何も滞り候事無之 又拙者拜借之公木ハ人參を以夫〃御差引可申と之約束ニ候と御答へ可被下と申来り 使伏兵ニ忍ひ居 急〃返詞申吳候様申聞候付 幾五郎より 仰迄も無之 土正節ニ相極居候事申ニも不及 此方様ニ者少も御惡意無御坐候 公木之事ハ則後日可被致区処と代官所方之書付ニ御坐候 御氣遣被成間敷と申遣候事 委狀ニ有之 略之

(최경 백옥에게서 비밀 편지가 왔다. 그 대강 뜻은 사정 박준한 시기에 (통신사 역지행빙에 관한) 공무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일본측이 조선측에) 대답하시면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며, 또한 제(최경 백옥)가 빌린 공목은 인삼으로써 각각 상쇄, 청산한다고 약속했다고 대답해 달라는 것이다. 그 편지를 전달한 자는 복병소에 숨어 있어서 빨리 답장을 달라고 전해 왔기에 오다 이쿠고로에게서 “물론 박준한(사정) 때에 (통신사 역지행빙이) 확정되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일본측 도다 다노모님께서도 전혀 나쁘게 생각하시는 바가 없으십니다. 공목(公木) 건에 대해서는 ‘후일에 구처(区処) 개별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다이칸쇼(代官所)의 문서에도 적혀져 있으므로 걱정할 것 없습니다” 라고 써서 보냈다. 자세히는 편지에 썼으므로 생략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오다 이쿠고로의 예상에 반해, 이 此의경신조공목전(庚申條公木錢) 건에 대한 의혹이 발단이 되어 그 후 이은바 서계위조(書契偽造, 외교 문서인 서계를 위조한 사건)에 관한 사길도 발각되어 역지행빙 교섭은 일대 좌절을 초래하게 되었다. 강정관(講定官) 현의순(경천)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조선 정부는 같은 해 7월 6일에 승정원(承政院) 동부승지(同副承旨) 윤명렬(尹命烈)을 동래부(東萊府) 안핵사(按覈使)로 임명하여 조사를 담당하게 하였다. 8월에 동래에 부임한 윤명렬은 최경(백옥)과 최국정(화언) 등을 유배지에서 불러들여 지세히 캐물었다. 즉 이하의 사료가 전하는 바와 같다.

尹命烈下來、全羅道長興定配譯官崔瑀及咸鏡道明川定配譯官崔國禎等、自刑曹、發羅杖押來究覈、其前後所犯情節、則庚申條公木代錢二萬三千餘兩、通聘事用情周旋次、兩譯、同爲手標貸出、其中七千兩、國禎取用、一萬六千餘兩、崔瑀取用、的實是白遣

『邊例集要』 下、卷之14、雜犯、乙丑 朴俊漢●朴致儉●崔瑀●崔國禎●金亨禹等五譯、自乙卯至乙丑十一年之間、馬島通聘事、書給手標、禮曹●東萊●釜山書契、偽造書給情節、一一綻露自服、同偽造書契、書給本府居朴潤漢、偽造圖書、刻給商賈金漢謨、使喚通事金武彥等罪狀、亦爲查覈、並與前後文蹟、謄書別單馳啓

『邊例集要』 下、卷之14、雜犯、乙丑、 및 『承政院日記』 純祖5年8月28日條

1805년 윤8월 9일, 10일에는 강정관(講定官) 현의순(경천)과 훈도 현식(양원)이 영리(營吏)와 아전(衙前)을 대동하고 왜관을 방문하여 취조를 행했는데, 그 때 오다 이쿠고로는 “공목(公木)에 대한 건은 당시 훈도였던 최경(백옥)이 ‘조선으로부터 대마번에 지급해야 할 공목(公木)이 지체되어 있는데, 그 회수불능이 되어 있는 만큼의 어음을 지급해 준다면 활용하여 차차 조금씩 변제하겠다’고 하므로 빌려준 것이다” 라고 진술하고, 전계한 임술(壬戌)년(1802) 3월 및 5월의 최경(백옥) 등이 제출한 경신조공목전(庚申條公木錢) 차용 의뢰 각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변명을 하고 있다. 즉 尙馬宗家文庫 「乙丑年閏八月掛合」 [記錄類Ⅲ/ 朝鮮關係/ A-①/ 16]¹²⁾에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彼方聞書大意覺

銅二十稱士正朴僉知被致借用候事為有之と覺へ候 其後對州勘定所え返濟為有之と承り候 公木參百束之事者 其節伯玉訓導ニ而 年條之公木相滯居候ニ付 死貨を以差操置候得者弁利ニ有之 此先キ追 〃 返濟可致との事ニ候 餘り委敷御尋

12) 国史編纂委員會所藏尙馬宗家文書[古文書10746]도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진 사료이다.

ニ付一向手近ク可申述候 戊午年之書契公義え差上有之 是ニ付候公幹少ニ而も相滯候而者對州興亡ニ拘り候へ者 よしや參百束四百束死貨を以借渡 何ぞ屈托無之事ニ候

附り右掛合中彼方より伯玉 華彦公幹之浮費有之致借用候と申たる趣 毎〃申聞候ニ付 我〃より其身者如何様ニも可被存 我〃ニおゐてハ左様ニ者不存候殊更乙卯年以来順成ニ至り[居候] 公幹今ニ至り浮費と申へく様無之 併戊午年公義え御書契差上有之 重大之御用少しニ而も相滯候而者國之大事兩國間之為候間 參百束 四百束借し渡し有之共 御不審被下候儀ニ無之 其上死貨の事言に不及候と 打合候付 大意前条ニ有之 (後略)

(조선측이 청취한 내용의 기록 대의(大意))

동(銅) 20칭(稱)을 박준한(사정)침지(兪知)가 차용하신 적이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애마주 간조쇼(勘定所)에 변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공목(公木) 300속(束) 건에 대해서는 그 시절에 최경(백옥)공이 혼도를 맡고 계셨는데 연조 공목(年条 公木, 해마다 조선으로부터 대마도로 보내는 공목)이 지체되어 있는데 그 사화(死貨, 회수불능 불량채권)을 활용하면 편리하고 나중에 차차 변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세세히 꼬치꼬치 캐물으시니 간략하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지행빙에 대하여 조선정부가 인정한) 모오년(戊午年)(1798)의 서계(書契)는 이미 에도막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에 관한 외교 공무가 조금이라도 지체된다면 대마주 흥망에 관계되므로 설령 300속(束), 400속(束) 사화(死貨)를 대여했더라도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부기: 그 의논 중에 조선측으로부터 최경(백옥), 최국정(화언)이 공무에 드는 비용이 있어서 차용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번 묻기 때문에 우리들로부터 “당신들은 어떻게든 해석하십시오. 우리들 입장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을모(乙卯)년(1795) 이래 순조롭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그 공무인데, 이제 와서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모오(戊午)년(1798)에 에도막부에 서계(書契)를 제출한 이상, 중대한 그 공무가 조금이라도 지체된다면 대마주가 큰 일 날 것이며 양국간을 위한 것이므로 300속(束), 400속(束) 대여하더라도 아무 이상하게 여기실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사화(死貨)이기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놓고 말했다. 그 대의(大意)는 앞의 조목에 있다.(후략)

이 장에서는, 쓰시마 종가문고 한글 서간류 중에서 소위 수회매국(受賄賣國)의 간역(奸訛)으로 알려진 왜학역관 최경(백옥)이 처형되기 2월여 전인 1805년 6월 22일에 유배지 전라도 장흥부(長興府)에서 왜관의 조선어대통사 오다 이쿠고로 앞으로 보낸 극비서간을 소개하면서 그 내용 및 경신조공목전(庚申条公木錢) 건 등 몇가지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종전의 문화년간(文化年間) 조선통신가 역

지행빙에 관한 연구는 조선측의 관찬(官撰) 기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간역(奸諛)이라는 낙인이 찍힌 왜학역관 최경(백옥) 등 당사자들의 시점이나 오다 이쿠고로 등 최전선에서 실제로 교섭에 임한 대마번측 당사자들의 시점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이 한글 서간이 그러한 결점을 보충하는 자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3. 쓰시마 종가문고 한글 서간의 특징: 한국 국내 자료(여성의 편지)와의 차이점

한국 국내에서 전해지는 조선시대 한글 편지는 발신자와 수신자 중 적어도 어느 한 쪽은 여성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황문환(2015) pp.29-33에서 지적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예외적이기는 하나, 주인이 노예에게 보내는 경우 등에, 남성들 간에서 주고받은 한글 편지도 드물게나마 존재한다. 위에서 소개한 쓰시마 종가문고 한글 서간도 그러한 예들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 국내에서 전해지는 여성이 관여한 일반적인 한글 편지와, 일본과 조선 간의 외교 현장에서 주고받았던 쓰시마 종가문고 한글 서간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양자 간에는 여백을 활용하여 적어 나갈 때의 순서 격식이나 격자법, 대두법과 같은 대우 격식 등에서 공통된 점도 많지만, 형식면 및 내용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1) 형식

형식면에서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여성이 관여한 일반적인 한글 편지의 경우에는 보통 순 한글로 표기되는 데 대하여, 쓰시마 종가문고 한글 서간은 한자와 한글의 혼용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황문환(2015) pp.155-157에는, 한 장에 적혀진 데도 불구하고 남성 수신자에게는 한문을, 여성 수신자에게는 한글을 사용하여 표기 수단을 엄격히 구별한 사간의 실례(송규렴 언간)가 소개되어 있지만, 쓰시마 종가문고 한글 서간이 한자와 한글의 혼용으로 표기된 것은 수신자인 쓰시마의 조선어통사들의 식자 능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쓰시마의 조선어통사들은 (중국식의) 정식 한문에는 능숙하지 못했지만 문장 수준이 아니라 문자 수준이면 얼마든지 한자를 읽을 수가 있었다.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조선의 왜학역관들은 한자와 한글의 혼용으로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2) 내용

내용면에서의 차이점은 여성이 관여한 일반적인 한글 편지의 경우에는 사적인 내용에 한정되는 데 대하여, 조선시대 후기에 일본과 조선의 외교 장면에서 주고받았던 한글 서간이나 문서의 경우에는 사적인 내용의 범위를 넘어서서 공적인 내용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 왜학역관 최경(백옥)의 한글 서간은 그 十 부분에서 “이 편지는 즉시 불태우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결코 공개하지 못한 극비리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사적인 사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선어대통사 오다 이쿠고로가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 서간집인 「편지집(片紙集)」(對馬鍵屋歴史館所藏)에 나타나는 다음의 한글서간(문서) 등은 공적인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第63通】[45a-45b]

一 今月二十五日朝의 異国船 一隻이 漂到於我國東萊境 竜塘浦口 故{고로} 問情次로 任官이 往見則 既非日本船이요 又非唐船이요 其人物이 亦是初見之貌樣이읍고 言語不相通호여 以文字로 問之호니 亦不解라 莫能卜호매 其何許人이也 人數則 近五十名이요 其人形則 鼻脊準호여 眼睛이 靑호고 毛髮이 黃而短호다 脊{적} 衣樣則 內白外黑호고 多羽氈之屬이라 上下衣 皆 狹結호고 以單紐호다 其帆竹二介 弓竹層〃호고 其船之長이 十八把요 廣이 七把라 船之左右에 掛大砲三坐호고 又持鳥銃호다 大抵如此호여 其裏面則 不知有何物이也 以待風汲水호고 今姑不為還去事

【현대어역】

一 이달 25일 아침에 이국선(異国船) 1척이 우리나라 동래(東萊) 지역의 용당포구(竜塘浦口)에 표착하였기 때문에 문정(問情, 사정에 대한 심문)을 하기 위하여 임관(任官, 왜학역관)이 가봤더니, 애초에 일본선이 아니고, 당선(唐船)도 아니고, 그 인물이야 역시 처음 보는 용모이고, 언어도 통하지 않아서 필담으로 물어봤는데 역시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결국 어떤 사람인지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인수는 50명 정도이고, 그 사람의 형상은 코가 높고 눈동자가 푸르고 머리카락은 누르고 짧습니다. 옷은 안이 희고 밖이 검고, 대부분은 날개나 털로 만든 종류입니다. 위, 아래 옷 모두 날씬하고 단추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돛대는 2 개이고, 궁죽(弓竹, 활대)는 층층으로 되어 있고, 그 배의 길이는 18파(把)이고 넓이는 7파(把)입니다. 배의 좌우에는 대포 3대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조총(鳥銃)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저 이와 같아서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풍(待風), 급수(汲水)를 위하여 지금 당분간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한글 서간(문서)는 1797년 8월 25일에 조선의 동래(東萊) 용당포구(竜塘浦口)에 표착한 이국선, 즉 William Robert Broughton을 선장으로 하는 영국의 schooner 선, Prince William Henry 호에 대하여, 조선측에서 일본측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지만¹³⁾, 이것은 원래 한글 서간(문서)으로서 성립된 것이 아니라, 한문으로 적성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 国会図書館所藏宗家文庫의 「倭館館守日記」나, 한국 国史編纂委員會所藏對馬宗家文書의 「異船一件記錄」[記錄類4986]에는 이 서간(문

13) 이 이전 일건(異船一件)에 대해서는 酒井雅代(2021)pp.71-106에서 상세하게 논의되어 있다.

서)와 내용이 일치하는 한문 문서를 발견할 수가 있다. 이하에 「倭館館守日記」의 시가를 게재한다.

1797년 8월 29일 조

(전략)

今般異船漂到に付 兩訳より書付差出 左に記之
覺

一 今月二十五日朝 異国船一隻漂到於我国
東萊境龍塘浦口故 任官問情次往見
則 既非日本船 又非唐船 其人物亦是
初見之貌樣 而言語不相通 以文字問之
亦不解 莫能卜其何許人也 人數則 近
五十名 其人形則 鼻背¹⁴⁾準 眼睛碧 毛髮
黃而短 衣樣則 內白外黑 多羽氈之屬 上下
衣 皆狹窄 連結單紐 其船帆竹二箇 弓竹
層 〃問¹⁵⁾架 而上之 其船之長 十八把 広
七把 船之左右 掛大砲三坐 又持鳥銃 大抵
如此 而裏面不知有何物也 以待風汲水 今
姑不爲還去 即

丁巳 八月二十九日 訓導 【右】 華彦崔僉正
別差 【右】 景和朴主簿

【현대어역】

이번의 이국선(異船) 표착 건에 대하여 양역(훈도와 별차)에게서 문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다음에 적어 놓는다.

覺

一 今月二十五日朝 異国船一隻漂到於我国
東萊境龍塘浦口故 任官問情次往見
則 既非日本船 又非唐船 其人物亦是
初見之貌樣 而言語不相通 以文字問之
亦不解 莫能卜其何許人也 人數則 近
五十名 其人形則 鼻背準 眼睛碧 毛髮
黃而短 衣樣則 內白外黑 多羽氈之屬 上下
衣 皆狹窄 連結單紐 其船帆竹二箇 弓竹
層 〃問架 而上之 其船之長 十八把 広
七把 船之左右 掛大砲三坐 又持鳥銃 大抵

14) 원문 그대로. 「脊」가 옳은 표기이다. 「異船一件記錄」에서는 「脊」라고 되어 있다.

15) 원문 그대로. 「間」이 옳은 표기이다. 「異船一件記錄」에서는 「間」이라고 되어 있다.

如此 而裏面不知有何物也 以待風汲水 今
姑不爲還去 即

정사(丁巳)년(1797) 8월 29일 훈도 화언 최 첨정(僉正)
별차 경화 박 주부(主簿)

즉, 위에 게재한 한글 서간(문서)는, 1797년 8월 29일에 훈도 최국정(화언)과 별차 박치검(경화)가 왜관에 제출한 한문 문서에 구결(口訣), 즉 한국어의 조사나 어미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글로 적어 넣은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 한글 서간(문서) 자체가 공식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식문서인 한문을 “언해”한 것으로서 한문 문서의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첨부된 문서로서 일정 정도 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参考文献>

- 長正統(1978) 「倭学訳官書簡よりみた易地行聘交渉」 『史淵』 115, 95-131. 九州大学文学部
- 岸田文隆(2014) 「対馬宗家文書朝鮮語ハングル書簡類の解説作業について」 『국어사연구』 18, 161-191. 국어사학회
- 岸田文隆(2015a) 「対馬宗家文書ハングル書簡類について一報告書の刊行を契機として一」 『朝鮮学報』 237, 1-63. 朝鮮学会
- 岸田文隆(2015b) 「대마도(對馬島) 종가문서(宗家文書) 한글 서간류에 대하여」 『韓國學研究論文集』 4, 1-20. 中国文化大学韓國語文学系出版
- 岸田文隆(2016) 「대마도(對馬島) 종가문서(宗家文書) 한글 서간류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語文学論叢』 35, 1-19. 国民大学校語文学研究所
- 酒井雅代(2021) 『近世日朝關係と対馬藩』 吉川弘文館
- 対馬歴史民俗資料館編(2009) 『対馬宗家文庫史料一紙物目録』(1)~(3) 長崎県教育委員会
- 対馬歴史民俗資料館編(2012) 『対馬宗家文庫史料絵図類等目録』 長崎県教育委員会
- 対馬歴史民俗資料館編(2015) 『対馬宗家文書史料 朝鮮訳官発給ハングル書簡調査報告書』 長崎県教育委員会
- 松原孝俊・岸田文隆・北川英一・許秀美・金京美・金周弼・金徳珍・金東哲・権洙用・黄文煥・小西敏夫・酒井裕美・酒井雅代・趙垺熙・鄭丞惠・中野等・藤川貴仁・古川祐貴・朴真完・山口華代・横山恭子・四辻義仁・梁興淑(2018) 『朝鮮通信使易地聘礼交渉の舞台裏—対馬宗家文庫ハングル書簡から読み解く』(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叢書3) 九州大学出版会

황문환(2015) 『조선시대의 한글편지, 인간諺簡』 도서출판 역락